

# 2019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칙 완전 개정 신구문대비표

제 33 대 총학생회<악보> 부총학생회장 최명환

총학생회칙 제 1 조(명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제 1 조 【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p>	<p>(총학생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p>	

총학생회칙 제 2 조(목적)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 조 【목적】</b></p> <p>① 본회는 본교 학사과정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며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2 조 【목적】</b></p> <p>본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1. 제 1 항</b></p> <p>- ① 본회는 본교 학사과정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며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 삭제</b></p> <p>: 1 항은 학교의 입장에서 쓰인 학칙의 조항. 이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p>

**총학생회칙 제 3 조(회원)**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3 조 【회원】</b></p> <p>①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p> <p>1. 학사 1 학기 등록자 : 1 학기 개강일부터 2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p> <p>2. 학사 2 학기 등록자 : 2 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해 1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p> <p>② 본교 학사과정 휴학생은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p> <p>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이 된다.</p> <p>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준회원 중에서 <b>정해진 기간 내에 총학생회 정회원 등록절차를 이행한 자</b>는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 등록기간은 제 1 항의 기간을 준용하며, 기타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3 조 【회원】</b></p> <p>① 본교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p> <p>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준회원이 되는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p> <p><b>(회원에 관한 세칙)</b></p> <p><b>제 2 조 [정회원의 정의]</b></p> <p>①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p> <p>1. 학사 1 학기 등록자 : 1 학기 개강일부터 2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p> <p>2. 학사 2 학기 등록자 : 2 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해 1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p> <p>② 제 3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세칙」 제 7 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준회원은 정회원이 된다. 기타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p> <p><b>제 3 조 【준회원의 정의】</b></p> <p>① 본교 학사과정 휴학생은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p> <p>②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이 된다.</p>	<p>1. 제 1 항, 제 4 항 → 회원에 관한 세칙 제 2 조</p> <p>2. 제 2 항, 제 3 항 → 회원에 관한 세칙 제 3 조</p> <p><b>3. 제 4 항</b></p> <p>- 정해진 기간 내에 총학생회 정회원 등록절차를 이행한 자 → 「재정운용세칙」 제 7 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 좀 더 명확하게 함.</p>

**총학생회칙 제 4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b></p> <p>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만을 가진다.</p> <p>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p> <p>④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p> <p>⑤ 본회의 활동 참여에 있어 회원에 부여하는 혜택에 정회원과 준회원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경우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p>	<p><b>(회원에 관한 세칙)</b></p> <p><b>제 4 조 【회원의 권리】</b></p> <p>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만을 가진다.</p> <p>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p> <p><b>제 5 조 【회원의 의무】</b></p> <p>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p> <p>②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p> <p><b>제 6 조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등】</b></p> <p>본회의 활동 참여에 있어 회원에 부여하는 혜택에 정회원과 준회원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경우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p>	<p>1. 제 1 항 → 회원에 관한 세칙 제 4 조제 1 항</p> <p>2. 제 2 항 → 회원에 관한 세칙 제 4 조제 2 항</p> <p>3. 제 3 항 → 회원에 관한 세칙 제 5 조제 1 항</p> <p>4. 제 4 항 → 회원에 관한 세칙 제 5 조제 2 항</p> <p>5.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등】</p> <p>6. 제 5 항 - 부여한다 →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우선권 부여가 강제화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강제화 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p>

총학생회칙 제 5 조(구성)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5 조 【구성】</b>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lt;개정 2016.03.05., 2017.06.01., 2017.09.07., 2017.12.21., 2018.12.0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li> <li>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기구의 집행기관</li> <li>3. 자치기구 : 학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생활관자치회, 무은재 학생회</li> <li>4. 전문기구 : 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li> <li>5. 언론기구 :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li> <li>6. 협의기구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li> <li>7. 특별기구</li> </ol>		<p><b>1. 제 5 조 【구성】 → 삭제</b> : 회칙으로 기구의 구성까지 규정할 필요 없음. 회칙과 세칙을 통해 충분히 파악되는 내용</p>

총학생회칙 제 6 조(학교운영참여)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6 조 【학교운영참여】</b>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회의 발전과 학생자치의 실현, 그리고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대학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총학생회칙)</b>  <b>제 4 조 【학교운영참여】</b>                      본회는 학생자치의 실현과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제 6 조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회의 발전과” → 삭제                      : 불필요한 어구이므로 삭제</p> <p>2. 제 6 조                      - “대학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 삭제                      : 대학에 종속된 느낌을 주는 어구이므로 삭제</p>

**총학생회칙 제 7 조(대학원총학생회와의 관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7 조 【대학원총학생회와의 관계】</b>                      본회는 본교 대학원총학생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b>(총학생회칙)</b>  <b>제 5 조 【대학원총학생회와의 관계】</b>                      ① 본회는 본교 대학원총학생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총학생회칙 제 8 조(의결기구 구성원 및 대표자의 책임·의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8 조 【의결기구 구성원 및 대표자의 책임·의무】</b></p> <p>①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회칙에 근거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본회 및 각 기구 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여야만 한다.</p> <p>④ 삭제 &lt;2018.12.09.&gt; [전문개정 2017.06.01.] [제목개정 2017.06.01.]</p>	<p><b>(총학생회칙)</b></p> <p><b>제 6 조 【대표자의 책임과 의무】</b></p> <p>①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본회 및 각 기구 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여야만 한다.</p>	<p>1. <b>【의결기구 구성원 및 대표자의 책임·의무】 → 【대표자의 책임과 의무】</b></p> <p>: 의결기구 구성원이라 명시할 필요 없음</p>

총학생회칙 제 9 조(세칙·규칙·자치규칙·내규)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9 조 【세칙·규칙·자치규칙·내규】</b></p> <p>① 본회는 회칙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규칙을 제·개정한다.</p> <p>②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은 규칙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해당 기구의 자치적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p> <p>③ 규칙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규칙의 근거가 되는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단, 특정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일반규칙의 제·개정은 「규칙제·개정세칙」을 따른다.</p> <p>④ 하위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한 하위규정의 조항은 효력이 없다.</p> <p>⑤ 본회의 모든 자치규칙 및 내규의 제·개정 사항은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p>		<p><b>1. 제 9 조 → 삭제</b></p> <p>: 세칙과 규칙의 종류와 위상이 회칙에 규정될 정도의 내용이라 볼 수 없음. 의결기구세칙의 세칙·규칙 제·개정 장(기존 규칙 제·개정 세칙)의 조항과 전문기구세칙, 자치기구세칙, 언론기구세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p>

**총학생회칙 제 10 조(회칙해석의 원칙과 절차)**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 조 【회칙해석의 원칙과 절차】</b></p> <p>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 15 조, 제 66 조, 제 69 조, 제 70 조를 준용한다.</p> <p>③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 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적 회칙해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본회의 중요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의 경우에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⑥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의 논의 과정 및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내규의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p>	<p><b>(회칙해석위원회규칙)</b></p> <p><b>제 2 조 【회칙 해석의 원칙】</b>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b>제 3 조 【구성】</b>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회칙해석위원이 되고,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둔다. 기타 구성은 「의결기구세칙」 제 5 조, 제 39 조를 준용한다.</p> <p><b>제 4 조 【소집】</b> ①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 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적 회칙해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b>제 6 조 【자문】</b> ④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 7 조 【공청회】</b> 본회의 중요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의 경우에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b>제 8 조 【의결된 회칙 해석】</b>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의 논의 과정 및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 9 조 【세칙·규칙】</b></p>	<p>1. 제 1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2 조</p> <p>2. 제 2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3 조, 제 4 조제 1 항,</p> <p>3. 제 3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4 조제 2 항</p> <p>4. 제 4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6 조</p> <p>5. 제 5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7 조</p> <p>6. 제 6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8 조</p> <p>7. 제 7 항 → 회칙해석위원회규칙 제 9 조</p> <p><b>8. 제 2 항</b> -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 15 조, 제 66 조, 제 69 조, 제 70 조를 준용한다.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회칙해석위원이 되고,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둔다. 기타 구성은 「의결기구세칙」 제 5 조, 제 39 조를 준용한다. : 준용만으로 이루어져 이해하기 어려움. 해당 준용 내용을 설명</p>

	<p>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내규의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p>	
--	---	--

총학생회칙 제 11 조(기록물관리)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 조 【기록물관리】</b></p> <p>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및 각 기구가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p> <p>③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기록물을 열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p> <p>④ 공개될 경우 회원의 정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입찰계약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p> <p>⑤ 비공개 자료의 목록은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자료에 대해 회원의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올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자료의 공개 여부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 결과와 주요 사유를 비공개 자료 목록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목록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기타 본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p>		<p><b>1. 제 11 조 → 삭제</b></p> <p>: 기록물관리는 총학생회의 사무 중 하나이므로 총학생회칙에 규정될 내용이라 볼 수 없음. 기록물관리규칙(기존 기록물관리세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p>

총학생회칙 제 12 조(통칙)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 조 【정의】</b>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임기구이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 조 【정의】</b> 본회의 의결기구(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임기구이다.</p>	<p>1. 제 11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 조</p>

총학생회칙 제 13 조(안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 조 【안건】</b>                      ① 본 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의결기구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본 회칙에서 “일반의결요건”이라 함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③ 본 회칙에서 “중요의결요건”이라 함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3 조 【안건】</b>                      ① 본 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의결기구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본 회칙에서 “일반의결요건”이라 함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③ 본 회칙에서 “중요의결요건”이라 함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p>	<p>1. 제 13 조 → 의결기구세칙 제 3 조</p>

**총학생회칙 제 14 조(의결기구의 위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 조 【의결기구의 위계】</b></p> <p>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p> <p>② 동일한 내용에 대한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lt;개정 2017.06.01.&gt;</p> <p>③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상위 의결기구에 상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06.01.&gt;</p> <p>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4 조 【의결기구의 위계】</b></p> <p>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p> <p>② 동일한 내용에 대한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p> <p>③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상위 의결기구에 상정할 수 있다.</p> <p>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p>	<p>1. 제 14 조 → 의결기구세칙 제 4 조</p>

총학생회칙 제 15 조(의장)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 조 【의장】</b>                      ① 의장은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5 조 【의장】</b>                      ① 의장은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 제 15 조 → 의결기구세칙 제 5 조</p>

총학생회칙 제 16 조(의장의 의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 조 【의장의 의무】</b>                      의장은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6 조 【의장의 의무】</b>                      의장은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p>	<p>1. 제 16 조 → 의결기구세칙 제 6 조</p>

총학생회칙 제 17 조(의장직무대행)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7 조 【의장직무대행】</b>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자치기구장 중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임시의장은 해당 의결기구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시의장의 의장직 수행은 해당 안건의 의사 및 표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li> <li>2. 기타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li> </ol>	<p><b>(의결기구세칙)</b>  <b>제 7 조 【의장직무대행】</b>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자치기구장 중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임시의장은 해당 의결기구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시의장의 의장직 수행은 해당 안건의 의사 및 표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li> <li>2. 기타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7 조 → 의결기구세칙 제 7 조</li> </ol>

총학생회칙 제 18 조(특별위원회)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8 조 【특별위원회】</b>                      의결기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의결기구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8 조 【특별위원회】</b>                      의결기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의결기구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제 18 조 → 의결기구세칙 제 8 조</p>

총학생회칙 제 19 조(회의록)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9 조 【회의록】</b>                      ① 의결기구의 모든 의사 및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기타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 및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9 조 【회의록】</b>                      ① 의결기구의 모든 의사 및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기타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규칙」 및 「기록물관리규칙」으로 정한다.</p>	<p>1. 제 19 조 → 의결기구세칙 제 9 조                      2. 제 2 항                      - 「회의진행세칙」 및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 「회의진행규칙」 및 「기록물관리규칙」으로 정한다.                      :</p>

총학생회칙 제 20 조(참여)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0 조 【참여】</b>                      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0 조 【참여】</b>                      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제 20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0 조</p>

총학생회칙 제 21 조(회의진행세칙)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1 조 【회의진행세칙】</b>                      기타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1 조 【회의진행규칙】</b>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규칙」으로 정한다.</p>	<p>1. 제 21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1 조                      2. 회의진행세칙 → 회의진행규칙</p>

총학생회칙 제 22 조(지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2 조 【지위】</b>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14 조 【학생총회】</b>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p>	<p>1. 제 22 조 → 총학생회칙 제 14 조 2. <b>【지위】 → 【학생총회】</b></p>

총학생회칙 제 23 조(구성)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3 조 【구성】</b>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p>	<p><b>(총학생회칙)</b> <b>제 14 조 【학생총회】</b>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p>	<p>1. 제 23 조 → 총학생회칙 제 14 조 2. <b>【구성】</b> → <b>【학생총회】</b></p>

**총학생회칙 제 24 조(의장의 변경)**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4 조 【의장의 변경】</b>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자치기구장 중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상태에서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학생총회가 소집된 경우, 자치기구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 인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lt;개정 2017.06.01.&gt;</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5 조 【의장의 변경】</b>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자치기구장 중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상태에서 제 12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학생총회가 소집된 경우, 자치기구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 인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p>	<p>1. 제 24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5 조</p>

총학생회칙 제 25 조(소집)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5 조 【소집】</b></p> <p>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요구</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3. 회원 20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제 61 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li> </ol> <p>②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 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없어도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 으로 정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12 조 【소집】</b></p> <p>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요구</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3. 회원 20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총학생회칙」 제 31 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li> </ol> <p>② 소집요구는 「서식관리규칙」 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없어도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규칙」 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25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2 조</li> <li>2. 제 1 항제 4 호 - 제 61 조에 따른 → 「총학생회칙」 제 31 조에 따른</li> <li>3. 제 2 항 - 「사무관리세칙」 → 「사무관리규칙」</li> <li>4. 제 4 항 - 「회의진행세칙」 → 「회의진행규칙」</li> </ol>

총학생회칙 제 26 조(개회·의결요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6 조 【개회·의결요건】</b>                      학생총회는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일                      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3 조 【개회·의결요건】</b>                      학생총회는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일                      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p>	<p>1. 제 26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3                      조</p>

총학생회칙 제 27 조(안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7 조 【안전】</b></p> <p>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전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전</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li> <li>3. 회원 200 인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li> <li>4. 제 61 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li> <li>5. 제 25 조제 3 항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안전</li> </ol> <p>② 안전발의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14 조 【안전】</b></p> <p>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전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전</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li> <li>3. 회원 200 인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li> <li>4. 「총학생회칙」 제 31 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li> <li>5.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안전</li> </ol> <p>② 안전발의는 「사무관리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27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4 조</li> <li>2. 제 1 항제 4 호 - 제 61 조에 따른 → 「총학생회칙」 제 31 조에 따른</li> <li>3. 제 1 항제 5 호 - 제 25 조제 3 항에 따라 →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li> <li>4. 제 2 항 - 「사무관리세칙」 → 「사무관리규칙」</li> </ol>

총학생회칙 제 28 조(안전 위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8 조 【안전 위임】</b>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전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전은 위임할 수 없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7 조 【안전 위임】</b>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전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전은 위임할 수 없다.</p>	<p>1. 제 28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7 조</p>

총학생회칙 제 29 조(개회 준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29 조 【개회 준비】</b>                      ①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는 집행기구가 담당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총괄한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6 조 【개회 준비】</b>                      ①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는 집행기구가 담당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총괄한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1. 제 29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6 조</p>

총학생회칙 제 30 조(지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30 조 【지위】</b>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8 조 【지위】</b>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1. 제 30 조 → 총학생회칙 15 조, 의결기구세칙 제 18 조</p>

총학생회칙 제 31 조(투표권)		
구문	신문	개정 내용
<b>제 31 조 【투표권】</b> 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b>(의결기구세칙)</b> <b>제 19 조 【투표권】</b> 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1. 제 31 조 → 의결기구세칙 제 19 조

총학생회칙 제 32 조(실시)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32 조 【실시】</b>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실시요구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실시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22 조 【실시 및 진행】</b>                      ①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실시요구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실시한다.</p>	<p>1. 제 32 조 → 의결기구세칙 제 22 조제 1 항</p>

총학생회칙 제 33조(실시 공고)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32 조 【실시 공고】</b>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실시를 실시 일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실시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② 제 1 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은 학생총투표에서 의결할 수 없다.</p>	<p><b>(학생총투표규칙)</b>  <b>제 2 조 【실시 공고】</b>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실시를 실시 일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실시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② 제 1 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은 학생총투표에서 의결할 수 없다.</p>	<p>1. 제 33 조 → 학생총투표규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34 조(성립·의결요건)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34 조 【성립·의결요건】</b></p> <p>① 학생총투표는 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개표는 학생총투표가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20 조 【성립·의결요건】</b></p> <p>①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개표는 학생총투표가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p>	<p>1. 제 34 조 → 의결기구세칙 제 20 조</p>

총학생회칙 제 35 조(안전 위임)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35 조 【안전 위임】</b>                      학생총투표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은 위임할 수 없으며 학생총투표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21 조 【안전 위임】</b>                      학생총투표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은 위임할 수 없으며 학생총투표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1. 제 35 조 → 의결기구세칙 제 21 조</p>

**총학생회칙 제 36 조(총투표관리위원회)**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36 조 【총투표관리위원회】</b></p> <p>① 학생총투표 실시가 의결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총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실시 준비를 보조한다.</p> <p>④ 기타 총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22 조 【총투표관리위원회】</b></p> <p>① 학생총투표 실시가 의결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총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실시 준비를 보조한다.</p> <p>④ 기타 총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1. 제 36 조 → 의결기구세칙 제 21 조</p>

총학생회칙 제 37 조(투표 기간)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37 조 【투표 기간】</b>                      ① 투표기간은 2 일의 범위 내에서 총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표기간을 1 일의 범위 내에서 1 회 연장할 수 있다.</p>	<p><b>(학생총투표규칙)</b>  <b>제 3 조 【투표 기간】</b>                      ① 투표기간은 2 일의 범위 내에서 총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표기간을 1 일의 범위 내에서 1 회 연장할 수 있다.</p>	<p>1. 제 37 조 → 학생총투표규칙 제 3 조</p>

총학생회칙 제 38 조(투표 방법)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38 조 【투표 방법】</b>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또는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기타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p>	<p><b>(학생총투표규칙)</b>  <b>제 4 조 【투표 방법】</b>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또는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기타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제 38 조 → 학생총투표규칙 제 4 조</p>

총학생회칙 제 39 조(결과 공고)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39 조 【결과 공고】</b>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 시간 이내에 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및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제 34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p><b>(학생총투표규칙)</b>  <b>제 6 조 【결과 공고】</b>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 시간 이내에 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및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의결기구세칙」 제 20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p>1. 제 39 조 → 학생총투표규칙 제 6 조</p> <p>2. 제 39 조 제 34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 의결기구세칙」 제 20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p>

총학생회칙 제 40 조(무효 처리)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40 조 【무효 처리】</b>                      명부상 총 투표자수와 총 투표용지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는 경우에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p>	<p><b>(학생총투표규칙)</b>  <b>제 5 조 【무효 처리】</b>                      명부상 총 투표자수와 총 투표용지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는 경우에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p>	<p>1. 제 40 조 → 학생총투표규칙 제 5 조</p>

총학생회칙 제 41 조(준용)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41 조 【준용】</b>                      기타 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b>(학생총투표규칙)</b>  <b>제 7 조 【세부 사항】</b>                      기타 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1. 제 41 조 → 학생총투표규칙 제 7 조</p> <p>2. 제 41 조  <b>【준용】 → 【세부 사항】</b>                      :조항명이 준용인 것은 어색. 세부 사항으로 변경</p>

총학생회칙 제 42 조(지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42 조 【지위】</b>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16 조 【지위】</b>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p>	<p>1. 제 42 조 → 총학생회칙 제 16 조</p>

**총학생회칙 43 조(대의원)**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43 조 【대의원】</b>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이다. &lt;개정 2016.03.05., 2017.06.01., 2017.09.07., 2018.12.09.&gt;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학과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장단                      4. 총여학생회장단                      5. 생활관자치회장단                      6. 무은재 학생회장단                      7. 열린 대의원                      ②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임명하고 해당 기구장이 전체학생대 의원회의 의장에게 보고한다. 단,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대의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의 인준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7.06.01.&gt;                      ③ 제 1 항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각 소속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대의원이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lt;개정 2016.03.05., 2017.06.01., 2018.12.09.&gt;                      ④ 본회의 운영에 있어 회원의 열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 1 항제 7 호의 열린 대의원을 둔다. 정회원은 「회의진행세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열린 대의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lt;개정 2017.06.01.&gt;                      ⑤ <b>제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b> 열린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7.06.01.&gt;                      ⑥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이 소속된 각 기구의 자치규칙에 명시된 임기를 준용한다. 단, <b>제 1 항 제 7 호의 경우와</b></p>	<p><b>(의결기구세칙)</b>  <b>제 24 조 【대의원】</b>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학과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장단                      4. 총여학생회장단                      5. 생활관자치회장단                      6. 무은재 학생회장단                      7. 열린 대의원                      ②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임명하고 해당 기구장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에게 보고한다. 단,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대의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 1 항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각 소속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대의원이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④ 본회의 운영에 있어 회원의 열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 1 항제 7 호의 열린 대의원을 둔다. 정회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열린 대의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열린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b>(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b>  <b>제 2 조 【대의원의 임기】</b>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이 소속된 각 기구의 자치규칙에</p>	<p>1. 제 1,2,3,4,5 항 → 의결기구세칙 제 24 조                      2. 제 6 항                      →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 2 조                      3. 제 7 항                      →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 3 조                      4. 제 8 항                      →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 4 조                      5. 제 10 항                      →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 7 조                      6. 제 11,12 항                      →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 5 조                      7. 제 5 항                      - 제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 삭제                      : 단서 조항을 명시할 필요 없음                      8. 제 6 항                      - 제 1 항제 7 호의 경우와                      → 열린대의원과 조항을 적어 놓으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들.</p>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대의원의 경우에는 대의원 인준 시점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개정 2017.06.01.>

⑦ 대의원이 궐위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⑧ 한 회원이 두 개 이상의 대의원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만약 겸직하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대의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단, 대의원 직을 갖게 한 원래의 직이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재적 대의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선출 과정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제 1 항제 7 호의 열린 대의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1 월, 4 월, 7 월, 10 월에 각각 1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⑪ 제 1 항제 1 호, 제 7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발언권·의결권을 가진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부대표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을 통해 최대 1 인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⑫ 제 11 항의 부대표의 파견은 대표의 청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부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와 함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 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명시된 임기를 준용한다. 단, **열린대의원과**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대의원의 경우에는 대의원 인준 시점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제 3 조 【대의원의 궐위】**  
대의원이 궐위일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제 4 조 【대의원의 겸직】**  
한 회원이 두 개 이상의 대의원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만약 겸직하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대의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단, 대의원 직을 갖게 한 원래의 직이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제 5 조 【부대표의 파견】**  
① 「의결기구세칙」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제 7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발언권·의결권을 가진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부대표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을 통해 최대 1 인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부대표의 파견은 대표의 청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부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와 함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중요 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열린대의원 모집 공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열린대의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1 월, 4 월, 7 월, 10 월에 각각 1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칙 44 조(대의원의 의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44 조 【대의원의 의무】</b></p> <p>① <b>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b></p> <p>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p> <p>③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모든 대의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⑤ 열린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⑥ 열린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19 조 【대의원의 의무】</b></p> <p>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p> <p>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모든 대의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25 조 【기구장으로서의 대의원】</b></p> <p>① 열린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열린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p>	<p>1. 제 1 항 -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삭제 : 품위 유지 조항은 왜곡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p> <p>2. 제 2 항 → 총학생회칙 제 19 조 제 1 항</p> <p>5. 제 3 항 → 총학생회칙 제 19 조 제 2 항</p> <p>6. 제 4 항 → 총학생회칙 제 19 조 제 3 항</p> <p>7. 제 5 항 → 의결기구세칙 제 24 조 제 1 항</p> <p>8. 제 6 항 → 의결기구세칙 제 24 조 제 2 항</p>

총학생회칙 47 조(정기회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47 조 【정기회의】</b>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 학기 개강 정기회의 : 2 월 22 일부터 3 월 7 일 사이에 개최</li> <li>2. 1 학기 중강 정기회의 : 5 월 25 일부터 6 월 7 일 사이에 개최</li> <li>3. 2 학기 개강 정기회의 : 8 월 25 일부터 9 월 7 일 사이에 개최</li> <li>4. 2 학기 중강 정기회의 : 11 월 24 일부터 12 월 7 일 사이에 개최</li> </ol>	<p><b>(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b>  <b>제 28 조 【정기회의】</b>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 월 정기회의 : 3 월 중 개최</li> <li>2. 6 월 정기회의 : 6 월 중 개최</li> <li>3. 9 월 정기회의 : 9 월 중 개최</li> <li>4. 12 월 정기회의 : 12 월 중 개최</li> </ol>	<p>1. 제 1,2,3,4 항                      1. 1 학기 개강 정기회의 : 2 월 22 일부터 3 월 7 일 사이에 개최 2. 1 학기 중강 정기회의 : 5 월 25 일부터 6 월 7 일 사이에 개최 3. 2 학기 개강 정기회의 : 8 월 25 일부터 9 월 7 일 사이에 개최 4. 2 학기 중강 정기회의 : 11 월 24 일부터 12 월 7 일 사이에 개최                      →                      1. 3 월 정기회의 : 3 월 중 개최 2. 6 월 정기회의 : 6 월 중 개최 3. 9 월 정기회의 : 9 월 중 개최 4. 12 월 정기회의 : 12 월 중 개최                      : 길고 복잡한 정기회의명 변경, 재정 안건 처리 일정에 맞춰 일정 변경, 급한 전학대회 준비를 방지 하기 위해 개최 기한을 연장.</p>

**총학생회칙 48 조(비정기회의)**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48 조 【비정기회의】</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비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lt;개정 2017.06.0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3. 회원 6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제 28 조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li> <li>5. 제 90 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li> <li>6. 제 170 조에 따른 회칙 개정 발의</li> </ol> <p>②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27 조 【소집】</b>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규칙」으로 정한다.</p> <p><b>제 29 조 【비정기회의】</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비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3. 회원 6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제 17 조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li> <li>5. 제 21 조에 따른 학생총투표의 안건 위임</li> <li>6. 「총학생회칙」 제 31 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li> <li>7. 「총학생회칙」 제 61 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칙」 개정안 학생총투표 부의</li> </ol> <p>② 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소집요구는 「서식관리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2 항 → 의결기구세칙 제 28 조 제 1,2 항</li> <li>2. 제 3 항 → 의결기구세칙 제 26 조 : 소집은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 모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li> <li>3. 제 2 항 - 「사무관리세칙」 → 「서식관리규칙」</li> <li>4. 제 3 항 - 「회의진행세칙」 → 「회의진행규칙」</li> <li>5. 추가→ 제 21 조에 따른 학생총투표의 안건 위임 : 학생총투표의 안건 위임도 규정</li> </ol>

총학생회칙 49 조(긴급회의)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49 조 【긴급회의】</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요구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긴급회의는 제 52 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5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서면의결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 으로 정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30 조 【긴급회의】</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요구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긴급회의는 제 27 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5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서면의결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규칙」 으로 정한다.</p>	<p>1. 제 2 항                      - 「회의진행세칙」                      → 「회의진행규칙」</p>

**총학생회칙 53 조(안건)**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53 조 【안건】</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 2 호, 제 3 호의 요건에 따른다. &lt;개정 2017.06.0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li> <li>3. 회원 4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li> <li>4. 제 48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건</li> <li>5. 제 28 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li> <li>6. 제 90 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안건</li> <li>7. 제 170 조에 따라 발의된 <b>회칙 개정안</b></li> <li>8. 제 49 조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사안에 따른 안건</li> <li>9. 제 86 조제 10 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발의한 안건</li> <li>10. 제 127 조제 4 항에 따라 발의된 언론기구 예산안 심의 안건</li> </ol> <p>② 안건발의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p> <p>③ 중요의결요건에 따르는 안건은 제 54 조제 1 항, 제 54 조제 2 항,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제 1 항이다. 단, 제 54 조제 1 항, 제 61 조, 제 62 조제 1 항의 경우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서만 의결이 가능하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33 조 【안건】</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 2 호, 제 3 호의 요건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li> <li>3. 회원 4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li> <li>4. 제 29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건</li> <li>5. 제 17 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li> <li>6. <b>제 21 조에 따라 학생총투표에서 위임된 안건</b></li> <li>7. 「총학생회칙」 제 32 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안건</li> <li>8. 「총학생회칙」 제 65 조에 따라 발의된 <b>총학생회칙 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 안건</b></li> <li>9. <b>제 53 조에 따라 발의된 세칙 제·개정 안건</b></li> <li>10. 제 30 조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사안에 따른 안건</li> <li>11. 「총학생회칙」 제 53 조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발의한 안건</li> <li>12. 「언론기구세칙」 제 3 조에 따라 발의된 언론기구 예산안 심의 안건</li> </ol> <p>② 안건발의는 「서식관리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p> <p>③ 중요의결요건에 따르는 안건은 제 1 항제 7 호, 제 8 호, 제 9 호, 「의결기구세칙」 제 13 조에 따른 징계 안건이다. 이 중 제 1 항제 7 호, 제 8 호, 「의결기구세칙」 제 13 조에 따른 징계 안건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서만 의결이 가능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가→제 53 조에 따라 발의된 세칙 제·개정 안건 : 세칙 제·개정 권한은 전학대회의 큰 권한 중에 하나이므로 안건 중 하나일 필요가 있음.</li> <li>2. 추가 → 제 21 조에 따라 학생총투표에서 위임된 안건 : 학생총투표에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추가함.</li> <li>3. 제 1 항제 7 호 회칙 개정안 →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 안건 : 회칙 개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이 아닌 부의 안건으로 수정</li> </ol>

총학생회칙 54 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54 조 【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규칙·내규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b>(총학생회칙)</b>  <b>제 25 조 【회칙·세칙·규칙】</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칙 제·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규칙·내규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1. 제 1 항                      총학생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 총학생회칙 제·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p>

**총학생회칙 55 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55 조 【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b>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 25 조제 1 항제 1 호의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제 32 조의 학생총투표 실시 의결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7.06.01.&gt;</p>	<p><b>(총학생회칙)</b>  <b>제 26 조 【학생총회·학생총투표】</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학생총투표 실시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총투표의 요건과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p>	<p>1. 추가 → 학생총투표의 요건과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p>

총학생회칙 59 조(감사에 관한 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59 조 【감사에 관한 사항】</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 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구의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구의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특정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b>협의기구</b>, 특별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한 종류로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p> <p>④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은 「<b>사무관리세칙</b>」으로 정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30 조 【감사】</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b>감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b></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34 조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구의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구의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특정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한 종류로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p> <p>③ 기타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b>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b>」에서 정한다.</p>	<p>1. 제 1 항 → 총학생회칙 제 30 조 제 1 항</p> <p>2. 추가 →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3. 제 2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4 조 제 1 항</p> <p>4. 제 3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4 조 제 2 항</p> <p>5. 제 4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4 조 제 3 항</p> <p>6. 제 3 항 - 협의기구 → 삭제 : 협의기구가 삭제됨에 따라 문구 삭제.</p> <p>6. 제 4 항 - 「사무관리세칙」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p>

총학생회칙 60 조(징계에 관한 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60 조 【징계에 관한 사항】</b>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b>협의기구</b>, 특별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위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lt;개정 2017.06.0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li> <li>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li> <li>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li> <li>4. 기구장 및 기구원 해임</li> <li>5. <b>학내 봉사 명령</b></li> </ol>	<p><b>(총학생회칙)</b>  <b>제 31 조 【징계】</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위배한 경우 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b>징계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b></p> <p><b>(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b>  <b>제 31 조 【징계】</b>                      ①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li> <li>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li> <li>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li> <li>4. 기구장 및 기구원 해임</li> </ol>	<p>1.추가 → 징계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2. 제 1,2,3,4 호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 제 31 조 제 1 항 제 1,2,3,4 호</p> <p>3. 제 5 호                      - 학내 봉사 명령→삭제                      :총학생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아님. 실제로 시행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p>

**총학생회칙 61 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1 조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b> 제 90 조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p>	<p><b>(총학생회칙)</b> <b>제 32 조 【총학생회장단 탄핵안】</b>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제 61 조 제 90 조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전체 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탄핵안의 상세 의결 과정 및 조건을 명시</p>

**총학생회칙 62 조(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2 조 【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총학생회장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p> <p>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당국 및 학생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인준 하며, 학생대표위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학생대표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 3 항의 학생대표위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에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33 조 【학교운영참여】</b>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총학생회장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p> <p>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당국 및 학생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인준하며, <b>학생대표위원의 임면 절차와 직무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b></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38 조 【학생대표위원】</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인준 하며, 학생대표위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학생대표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학생대표위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에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1. 제 1,2 항 → 총학생회칙 제 33 조 제 1,2,3 항</p> <p>2. 제 3 항 → 총학생회칙 제 33 조 3 항, 의결기구세칙 제 38 조 1 항</p> <p>3. 제 4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8 조 제 2 항</p> <p>3. 추가 → 학생대표위원의 임면 절차와 직무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p>

총학생회칙 63 조(대의활동에 관한 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53 조 【대의활동에 관한 사항】</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p> <p>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b>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b></p> <p>③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34 조 【대의활동】</b></p> <p>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 또는 외부 단체와의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p> <p>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1. 제 2 항</p> <p>-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 삭제</p> <p>: 변경 및 취소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모호함. 제 1 항에서 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라 해석됨.</p>

총학생회칙 64 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4 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b>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 18 조에 의거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p>		<p>1. 제 64 조 → 삭제                      : 8 조(특별위원회) 내용으로 충분</p>

총학생회칙 65 조(지위)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5 조 【지위】</b>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임 의결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35 조 【지위 및 구성】</b>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임 의결기구이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세칙으로 정한다.</p>	<p>1. 추가 →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세칙으로 정한다.</p>

총학생회칙 66 조(중앙운영위원회)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6 조 【중앙운영위원회】</b>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lt;개정 2016.03.05., 2017.06.01., 2017.09.07., 2018.12.09.&gt;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 중 3 인                      3. <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중 2 인</b>                      4. 학과학생회장 이외 각 자치기구장                      5. 각 전문기구장                      ② 제 1 항제 1 호, 제 2 호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자가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이 또한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직에서 제한한다. &lt;개정 2018.12.09.&gt;                      ③ 제 1 항제 2 호, <b>제 3 호에</b>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각 기구에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변경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이는 <b>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b>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7.06.01., 2018.12.09.&gt;                      ④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재직 중앙운영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lt;개정 2018.12.09.&gt;                      ⑤ <b>총학생회장단 이외의 중앙운영위원은</b>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조퇴하게 될 때에는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부대표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 및 내규에서 정하는 부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lt;신설 2018.12.09.&gt;                      ⑥ 부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b>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b>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lt;신설 2018.12.09.&gt;                      ⑦ 중앙운영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제 43 조제 8 항을 준용한다. &lt;신설 2018.12.09.&gt;</p>	<p><b>(의결기구세칙)</b>  <b>제 39 조 【중앙운영위원】</b>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 중 3 인                      3. <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b>                      4. 학과학생회장 이외 각 자치기구장                      5. 각 전문기구장                      ② 제 1 항제 1 호, 제 2 호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자가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이 또한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직에서 제한한다.                      ③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변경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이는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④ <b>중앙운영위원의 자격에 관한 기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규칙」</b>으로 정한다.  <b>(중앙운영위원회규칙)</b>  <b>제 2 조 【부대표의 파견】</b>                      ① 「의결기구세칙」 제 39 조제 1 항, 제 2 항 이외의 중앙운영위원은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조퇴하게 될 때에는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부대표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 및 내규에서 정하는 부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 부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b>제 3 조 【중앙운영위원의 겸직】</b>                      중앙운영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 4 조를 준용한다.</p>	<p>1. 제 1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9 조 제 1 항                      2. 제 2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9 조 제 2 항                      3. 제 3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9 조 제 3 항                      4. 제 4 항                      → 중앙운영위원회규칙 제 4 조                      5. 제 5, 6 항                      → 중앙운영위원회규칙 제 2 조                      6. 제 7 항                      → 중앙운영위원회규칙 제 3 조                      7. 제 1 항제 3 호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중 2 인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 부담 경감을 위해 1 인으로 축소, 부대표 파견을 가능케하기 위해 의장으로 규정.                      8. 제 5 항                      - 총학생회장단 이외의 중앙운영위원은 → 「의결기구세칙」 제 39 조제 1 항, 제 2 항 이외의 중앙운영위원은                      : 중앙집행위원 중 3 인은 부대표가 없으므로 파견이 불가능. 이를 반영하여 수정</p>

	<p><b>제 4 조 【중앙운영위원 명단】</b>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재직 중앙운영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p>	<p>9. 제 3,6 항 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 → 삭제 :불필요한 문구</p>
--	---	--

총학생회칙 67 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67 조 【중앙운영위원의 의무】</b>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상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lt;신설 2018.12.09.&gt; 1. 중앙운영위원회의 공개 경고문 게재 2. 당 학기의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에서 제외</p>	<p><b>(의결기구세칙)</b>  <b>제 40 조 【중앙운영위원의 의무】</b> ①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공개 경고문 게재 2. 당 학기의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에서 제외</p>	<p>1. 제 1 항                      -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삭제                      : 품위 유지 조항은 왜곡되어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2. 제 2 항                      - 추가 →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 대의원의 의무와 통일성을 부여</p>

총학생회칙 68조(의장의 변경)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8 조 【의장의 변경】</b>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또는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 자가 회의를 개최하며, 개회 직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한 1 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p>	<p><b>(의결기구세칙)</b>  <b>제 15 조 【의장의 변경】</b>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또는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개최하며, 개회 직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한 1 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p>	<p>1. 제 68 조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 삭제                      : 의결기구세칙 통칙으로 규정 가능                      - 그 직을 → 의장을                      :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p>

총학생회칙 69 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9 조 【회의】</b></p> <p>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매주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06.01., 2018.12.09.&gt;</p> <p>②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lt;개정 2018.12.0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장의 소집요구</li> <li>2.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li> <li>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회원 3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ol> <p>③ 제 2 항제 2 호, 제 3 호, 제 4 호에 의한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7.06.01., 2018.12.09.&gt;</p> <p>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41 조 【회의】</b> 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매주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b>자세한 일정</b> 확정은 「중앙운영위원회규칙」을 따른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장의 소집요구</li> <li>2.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li> <li>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회원 3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ol> <p>③ 제 2 항제 2 호, 제 3 호, 제 4 호에 의한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 자세한 일정 확정은 「중앙운영위원회규칙」을 따른다.</li> </ul> </li> <li>2. 제 4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진행세칙」 → 「회의진행규칙」</li> </ul> </li> </ol>

**총학생회칙 70 조(개회·의결요건)**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4 조 【개회·의결요건】</b></p> <p>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lt;개정 2017.06.01., 2018.12.09.&gt;</p> <p>②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lt;신설 2018.12.09.&gt;</p> <p>③ 제 66 조제 5 항에 따른 부대표의 파견이 소집 공고에 명시된 경우 개최시 출석 인원으로 인정한다. &lt;신설 2018.12.09.&gt;</p> <p>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중앙운영위원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별 도의 의결요건이 규정된 안건은 규정된 의결요건을 따른다. &lt;개정 2018.12.09.&gt;</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8 조 【개회·의결요건】</b></p> <p>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중앙운영위원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별도의 의결요건이 규정된 안건은 규정된 의결요건을 따른다.</p> <p><b>(중앙운영위원회규칙)</b></p> <p><b>제 2 조 【부대표의 파견】</b></p> <p>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부대표의 파견이 소집 공고에 명시된 경우 개최시 출석 인원으로 인정한다.</p>	<p>1. 제 1,2,4 항 → 의결기구세칙 제 8 조 제 1,2,3 항</p> <p>2. 제 3 항 → 중앙운영위원회규칙 제 3 항</p>

총학생회칙 71 조(안전)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71 조 【안전】</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전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 1 호, 제 4 호, 제 5 호의 요건에 따른다. &lt;개정 2017.06.0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전</li> <li>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전</li> <li>3. 언론기구가 발의한 해당 언론기구의 경정예산편성에 관한 안전</li> <li>4.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전</li> <li>5. 회원 3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전</li> <li>6. 제 69 조제 2 항제 2 호, 제 3 호, 제 4 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전</li> <li>7.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위임된 안전</li> <li>8. 기타 회칙·세칙·규칙에 따른 안전</li> </ol> <p>② 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과정을 통해 발의된 안전을 제외한 안전발의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43 조 【안전】</b>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전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 1 호, 제 4 호, 제 5 호의 요건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전</li> <li>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전</li> <li>3. 언론기구가 발의한 해당 언론기구의 경정예산편성에 관한 안전</li> <li>4.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전</li> <li>5. 회원 3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전</li> <li>6. 제 41 조제 2 항제 2 호, 제 3 호, 제 4 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전</li> <li>7.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위임된 안전</li> <li>8. 기타 회칙·세칙·규칙에 따른 안전</li> </ol> <p>② 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과정을 통해 발의된 안전을 제외한 안전발의는 「서식관리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2 항 「사무관리세칙」 → 「서식 관리 규칙」</li> </ol>

총학생회칙 72 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64 조 【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개정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 제·개정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p> <p>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규칙제·개정세칙」을 따른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40 조 【세칙·규칙】</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 제·개정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p>	<p>1. 제 1 항 → 삭제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 변경에 따른 수정</p> <p>2. 제 3 항 -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규칙제·개정세칙」을 따른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일반 규칙이 아니라 세칙에 부수된 규칙까지도 개정할 수 있는 주체</p>

**총학생회칙 73 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4 조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의결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실시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 및 결정한다.</p> <p>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다. 단, 아직 인준되지 아니한 제 43 조제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열린 대의원 지원자는 재적 대의원 명단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인준되어 임기 중인 열린 대의원만 재적 대의원 명단에 포함한다. &lt;개정 2017.06.01.&gt;</p> <p>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공고일부터 제 43 조제 1 항제 7 호의 열린 대 의원에 지원한 정회원의 지원 서류를 사전 심의하며, 형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한 뒤 해당 회의에 보고하여 열린 대의원의 인준을 요청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46 조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의결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실시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 및 결정한다.</p> <p><b>(중앙운영위원회규칙)</b></p> <p><b>제 5 조 【재적 대의원 명단】</b></p> <p>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다. 단, 아직 인준되지 아니한 「의결기구세칙」 제 23 조제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열린 대의원 지원자는 재적 대의원 명단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인준되어 임기 중인 열린 대의원만 재적 대의원 명단에 포함한다.</p> <p><b>제 6 조 【열린대의원 사전 심의】</b></p> <p>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공고일부터 「의결기구세칙」 제 23 조제 1 항제 7 호의 열린 대의원에 지원한 정회원의 지원 서류를 사전 심의하며, 형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한 뒤 해당 회의에 보고하여 열린 대의원의 인준을 요청한다.</p>	<p>1. 제 1,2 항 → 의결기구세칙 제 45 조 제 1,2 항</p> <p>2. 제 3 항 → 중앙운영위원회규칙 제 5 조</p> <p>3. 제 4 항 → 중앙운영위원회 제 6 조</p>

총학생회칙 74 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74 조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및 조정한다. 단,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41 조 【집행기구】</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및 조정한다. 단,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p>	

총학생회칙 75 조(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75 조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b>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의 설치를 심의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을 <b>요청한다</b>.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 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p>	<p><b>(총학생회칙)</b>  <b>제 42 조 【특별기구】</b>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의 설치를 심의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을 <b>받는다</b>.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 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p>	<p>1.제 75 조                      - 요청한다 → 받는다                      : 더 맞는 표현으로 수정</p>

**총학생회칙 77 조(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77 조 【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대학 당국에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 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위원 추천사항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③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본회의 각 기구 또는 각 기구장이 대학 당국 및 학생 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와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전 심의 없이 협의를 진행한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 언론기구가 각종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협의결과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49 조 【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b>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38 조의 학생대표위원을 대학 당국에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위원 추천사항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③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본회의 각 기구 또는 각 기구장이 대학 당국 및 학생 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와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전 심의 없이 협의를 진행한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 언론기구가 각종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협의결과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p>	<p>1. 제 1 항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 제 38 조의 :해당 조항에서 학생대표위원의 정의를 설명할 필요 없음.</p>

총학생회칙 78 조(의결제한안건)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78 조 【의결제한안건】</b>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없다. &lt;개정 2017.09.0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탄핵</li> <li>2. 회칙·세칙 제·개정</li> <li>3.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실시</li> <li>4. 대학 당국 및 본회 내외의 단체에 본회 차원의 의사표명</li> <li>5.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li> <li>6. 징계</li> </ol>	<p><b>(의결기구세칙)</b>  <b>제 50 조 【의결제한안건】</b>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탄핵</li> <li>2. 회칙·세칙 제·개정</li> <li>3.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실시</li> <li>4. 대학 당국 및 본회 내외의 단체에 본회 차원의 의사표명</li> <li>5.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li> <li>6. 징계</li> </ol>	

총학생회칙 79 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79 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b>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8 조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p>		<p>1. 조항 삭제                      :제 8 조(특별위원회) 조항으로 충분</p>

**총학생회칙 80 조(비상대책위원회)**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64 조 【비상대책위원회】</b></p> <p>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 시간 후 구성된다. &lt;개정 2018.12.0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2 인 모두가 사퇴 또는 궐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 일이 넘지 않을 경우</li> <li>2.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 일이 넘지 않을 경우</li> <li>3.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궐위인 경우</li> </ol> <p>②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lt;개정 2016.03.05., 2017.06.01., 2017.09.07., 2018.12.0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중 2 인</li> <li>2. 학과학생회장 이외 각 자치기구장</li> <li>3. 각 전문기구장</li> </ol> <p>③ 각 비상대책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자가 비상대책위원이 되며, 이 또한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lt;개정 2018.12.09.&gt;</p> <p>④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원 중 최대 3 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8.12.09.&gt;</p> <p>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구성된 경우, 각 전문기구장은 첫 회의 개최 직후 인준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다. &lt;개정 2017.06.01, 2018.12.09.&gt;</p> <p>⑥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인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 일이 넘는 동안 총학생회장단 선거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lt;신설 2018.12.09.&gt;</p> <p>⑦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 15 조, 제 69 조, 제 70 조를 준용한다. &lt;신설 2018.12.09.&gt;</p>	<p><b>(집행기구세칙)</b></p> <p><b>제 13 조 【비상대책위원회】</b></p> <p>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 시간 후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2 인 모두가 사퇴 또는 궐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 일이 넘지 않을 경우</li> <li>2.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 일이 넘지 않을 경우</li> <li>3.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궐위인 경우</li> </ol> <p><b>(비상대책위원회규칙)</b></p> <p><b>제 2 조 【비상대책위원】</b></p> <p>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과학생회장 중 1 인</li> <li>2. 학과학생회장 이외 각 자치기구장</li> <li>3. 각 전문기구장</li> </ol> <p>② 각 비상대책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자가 비상대책위원이 되며, 이 또한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p> <p>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원 중 최대 3 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b>(비상대책위원회규칙)</b></p> <p><b>제 3 조 【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b></p> <p>① 「집행기구세칙」 제 1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총학생회장 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인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 일이 넘는 동안 총학생회장단 선거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p> <p>② 「집행기구세칙」 제 1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총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 항 → 집행기구세칙 제 13 조 제 1 항</li> <li>2. 제 2 항 → 비상대책위원회규칙 제 2 조 제 1 항</li> <li>3. 제 3 항 → 비상대책위원회규칙 제 2 조 제 2 항</li> <li>4. 제 4 항 → 비상대책위원회규칙 제 2 조 제 3 항</li> <li>5. 제 5 항 → 비상대책위원회규칙 제 3 조 제 2 항 - 「집행기구세칙」 추가</li> <li>6. 제 6 항 → 비상대책위원회규칙 제 3 조 제 1 항 - 「집행기구세칙」 추가</li> </ol>

	<p>생회장 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경우, 각 전문기구장은 첫 회의 개최 직후 인준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다.</p>	
--	---	--

총학생회칙 81 조(권한·업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81 조 【권한·업무】</b></p> <p>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lt;개정 2018.12.09.&gt;</p> <p>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lt;개정 2018.12.09.&gt;</p> <p>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집행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산한다. &lt;개정 2018.12.09.&gt;</p> <p>④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lt;신설 2018.12.09.&gt;</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51 조 【비상대책위원회】</b>  「집행기구세칙」 제 12 조에 의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p> <p><b>(집행기구세칙)</b></p> <p><b>제 13 조 【비상대책위원회】</b></p> <p>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p> <p><b>(비상대책위원회규칙)</b></p> <p><b>제 5 조 【집행부】</b></p> <p>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집행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산한다.</p> <p>②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p>	<p>1. 제 1 항 → 의결기구세칙 제 51 조</p> <p>2. 제 2 항 → 집행기구세칙 제 13 조 제 2 항</p> <p>3. 제 3,4 항 → 비상대책위원회규칙 제 5 조 제 1,2 항</p> <p>4. 제 1 항 - 추가 → 「집행기구세칙」 제 12 조에 의해 구성된 :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기구의 하부 조항으로 들어가면서, 의결기구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 제 51 조로 규정.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추가함.</p>

총학생회칙 82 조(위원장)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82 조 【위원장】</b></p> <p>① 총학생회칙에서 가장 앞서 규정된 기구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이 첫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단, 제 2 항제 1 호에 규정된 2 인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학생 대표자협의회에서 지정한다. &lt;개정 2018.12.09.&gt;</p> <p>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lt;개정 2018.12.09.&gt;</p> <p>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첫 회의를 소집한 자가 비상대책 위원장이 된다. &lt;신설 2018.12.09.&gt;</p> <p>④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권한을 각 비상대책위원이 나누어 맡을 수 있다. &lt;개정 2018.12.09.&gt;</p>	<p><b>(비상대책위원회규칙)</b></p> <p><b>제 4 조 【위원장】</b></p> <p>① 「자치기구세칙」에서 가장 앞서 규정된 기구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이 첫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단, 학과학생회장 중 1 인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지정한다.</p> <p>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p> <p>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첫 회의를 소집한 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p> <p>④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권한을 각 비상대책위원이 나누어 맡을 수 있다.</p>	<p>1. 제 1 항</p> <p>- 총학생회장→「자치기구세칙」</p> <p>: 총학생회칙에서 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총학생회칙에서 가장 앞서 규정된 산하기구는 자치기구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함.</p>

총학생회칙 83 조(정의)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83 조 【정의】</b>                      집행기구는 본회의 사무와 업무 집행을 위한 상임기구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p>	<p><b>(집행기구세척)</b>  <b>제 1 조 【정의】</b>                      집행기구는 본회의 사무와 업무 진행을 위한 상임기구이다.</p>	<p>1.제 83 조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삭제                      : 본 내용으로 집행기구의 역할이 한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p>

총학생회칙 84 조(구성)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84 조 【구성】</b>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기관을 지칭한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회 3. 각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하위 집행기관</p>		<p>1. 조항 삭제                      :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 집행위원회임이 회칙과 세칙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남. 3 호는 해당 자치기구에서 명시하면 될 내용.</p>

총학생회칙 제 85 조(지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85 조 【지위】</b>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b>(총학생회칙)</b>  <b>제 44 조 【지위】</b>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1.제 2 항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삭제                      :해당 내용은 의결기구세칙의 의장조항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음.                      개정안 제 44 조는 집행기구 장 하부 조항이므로 본 내용이 불필요함.</p>

**총학생회칙 제 86 조(권한)**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86 조 【권한】</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갖고, 중앙집행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p> <p>④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p> <p>⑤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p> <p>⑥ 총학생회장단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 및 위원장·위원에 관하여서는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⑦ 총학생회장단은 각 기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구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⑧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 행정의 문제에 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⑨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대외적 협의,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 63 조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⑩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별도의 요건 없이 발의할 수 있다. &lt;개정 2017.06.01.&gt;</p>	<p><b>(총학생회칙)</b></p> <p><b>제 45 조 【권한】</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p> <p><b>제 53 조 【발의권】</b></p> <p>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별도의 요건 없이 발의할 수 있다.</p> <p><b>제 54 조 【직속위원회】</b></p> <p>총학생회장단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b>제 55 조 【기구운영참여】</b></p> <p>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모든 산하 기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구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b>제 56 조 【학교운영참여】</b></p> <p>총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 행정의 문제에 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b>제 57 조 【대외활동】</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대외적 협의,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p>	<p>1.제 1,2 항 → 총학생회칙 45 조</p> <p>2.제 3,4,5 항 → 집행기구세칙 3 조</p> <p>3.제 6 항 → 총학생회칙 54 조</p> <p>4.제 7 항 → 총학생회칙 55 조</p> <p>5.제 8 항 → 총학생회칙 56 조</p> <p>6.제 9 항 → 총학생회칙 57 조</p> <p>7.제 10 항 → 총학생회칙 53 조</p>

외활동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행기구세칙)**

**제 3 조 【총학생회장단】**

- ①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갖고, 중앙집행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 제 87 조(의무)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87 조 【의무】</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 및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46 조 【의무】</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 49 조 【인수 인계】</b></p> <p>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 및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1. 제 1,3,4 항 → 총학생회칙 46 조</p> <p>2. 제 2 항 → 삭제 : 의결기구에 대한 내용. 의결기구 하부 조항으로 충분히 규정 가능</p> <p>3. 제 5 항 → 총학생회칙 49 조</p>

총학생회칙 제 90 조(탄핵)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90 조 【탄핵】</b></p> <p>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li> <li>2. 회원 200 인 이상의 연서</li> </ol>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일주일 이내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부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자치기구장 중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부의를 재적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이때,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실시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p> <p>④ 탄핵안은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제 26 조, 학생총투표의 경우에는 제 34 조제 1 항의 단서에 따라 의결한다.</p> <p>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1 인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단, 2 인 중 1 인이 사퇴하거나 궐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32 조 【총학생회장단 탄핵안】</b></p> <p>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li> <li>2. 회원 200 인 이상의 연서</li> </ol>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일주일 이내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해야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부의를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1 인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단, 2 인 중 1 인이 사퇴하거나 궐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제 1,2,3 항 → 총학생회칙 32 조</p> <p>2.제 4 항 → 삭제</p> <p>: 불필요한 조항. 의결기구세칙으로 충분히 규정 가능</p>

총학생회칙 제 93 조(국서)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93 조 【국서】</b>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각 국서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총학생회장단이 정한다.                      ②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은 총학생회장단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p>	<p><b>(집행기구세칙)</b>  <b>제 7 조 【국서】</b>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각 국서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총학생회장단이 정한다.                      ②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은 총학생회장단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p>	<p>1.제 1,2 항 → 집행기구세칙 제 7 조</p>

총학생회칙 제 94 조(업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94 조 【업무】</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의 진행을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기구·전문기구·특별기구에 관련된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p> <p>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개회·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관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p> <p>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각 기구는 결산보고서·예산안의 수합에 협조하여야 한다</p>	<p><b>(집행기구세칙)</b></p> <p><b>제 4 조 【중앙집행위원회】</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의 진행을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특별기구 및 각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하위 집행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p> <p><b>제 8 조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개회·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서식관리규칙」에 따라 제작한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 9 조 【재정에 관한 사항】</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기구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한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기구의 본회 재정 운용을 감시·감독하여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총학생회 예산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각 기구는 예산안·결산보고서의 수합에 협조하여야한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예산안·결산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p>1.제 1,2,3 조 → 집행기구세칙 제 4 조</p> <p>2.제 4,5 조 → 집행기구세칙 제 8 조</p> <p>3.제 6 조 → 집행기구세칙 제 9 조 2 항</p>

총학생회칙 제 95 조(중앙집행회의)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95 조 【중앙집행회의】</b>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에 속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집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b>(집행기구세칙)</b> <b>제 11 조 【중앙집행회의】</b>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에 속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집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1.제 95 조→ 집행기구세칙 11 조</p>

총학생회칙 제 96 조(집행위원장회의·계열회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96 조 【집행위원장회의·계열회의】</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기구의 집행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기구의 동종 업무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b>(집행기구세칙)</b></p> <p><b>제 12 조 【집행위원장회의·계열회의】</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기구의 집행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기구의 동종 업무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1.제 1,2 항 → 집행기구세칙 12 조</p>

총학생회칙 제 97 조(정의)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97 조 【정의】</b>                      자치기구는 상시적 대의수립과 학생사회의 민주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임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60 조 【자치기구 일반】</b>                      ① 자치기구는 상시적 대의수립과 학생사회의 민주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임기구이다.                      ② 자치기구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의 제·개정권을 가진다.                      ④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회장(단)과 최고결기기구인 총회를 둔다.                      ⑤ 기타 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1. 제 97 조 → 총학생회칙 제 60 조 1항                      2. 추가 → 제 2,3,4,5 항                      : 자치기구 통칙을 세칙으로 내림에 따라 핵심 내용은 회칙에 남김</p>

총학생회칙 제 98 조(의결기관)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98 조 【의결기관】</b>                      ①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자치기구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기타 상임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2 조 【의결기관】</b>                      ①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자치기구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기타 상임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2 항 → 자치기구세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99 조(회장단)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99 조 【회장단】</b></p> <p>① 자치기구 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의 원회의 대의원이 된다.</p> <p>② 회장은 해당 자치기구의 대표로서 의결기구 및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학과학생부회장의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서의 직무 대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④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p> <p>⑤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b>(자치기구세칙)</b></p> <p><b>제 3 조 【회장단】</b></p> <p>① 자치기구 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p> <p>② 회장은 해당 자치기구의 대표로서 의결기구 및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p> <p>⑤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2,3,4,5 항 → 자치기구세칙 제 3 조</p>

총학생회칙 제 100 조(집행위원회)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0 조 【집행위원회】</b></p> <p>①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p> <p>②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 집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b>(자치기구세칙)</b></p> <p><b>제 4 조 【집행위원회】</b></p> <p>①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p> <p>②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 집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2,3 항 → 자치기구세칙 제 4 조</p>

총학생회칙 제 101 조(개정)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1 조 【개정】</b></p> <p>① 자치기구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p> <p>1. 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p> <p>2. 자치기구는 대학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존중한다.</p> <p>3.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다.</p> <p>② 자치기구는 전체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 76 조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③ 자치기구 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 76 조제 2 항, 제 3 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자치기구세칙)</b></p> <p><b>제 5 조 【개정】</b></p> <p>① 자치기구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p> <p>1. 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p> <p>2. 자치기구는 대학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존중한다.</p> <p>3.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다.</p> <p>② 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22 조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35 조, 제 36 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분기 종료 후 7 일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자치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2 항과 3 항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p>	<p>1.제 1,3 항 → 자치기구세칙 제 5 조 1,4 항</p> <p>2.제 2 항 자치기구는 전체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 76 조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22 조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35 조, 제 36 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분기 종료 후 7 일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예·결산 처리 과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p>

총학생회칙 제 102 조(자치규칙·내규)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2 조 【자치규칙·내규】</b></p> <p>①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자치규칙의 제·개정권은 해당 자치기구 총회에 있다.</p> <p>②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자치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자치기구세칙)</b></p> <p><b>제 7 조 【자치규칙·내규】</b></p> <p>①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자치규칙의 제·개정권은 해당 자치기구 총회에 있다.</p> <p>②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자치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제 102 조 → 자치기구세칙 제 7 조</p>

총학생회칙 제 103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3 조 【목적】</b> 학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민주적 자 질향상과 자주적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8 조 【목적】</b> 학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민주적 자 질향상과 자주적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한다.</p>	<p>1.제 103 조 → 자치기구세칙 제 7 조</p>

총학생회칙 제 104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4 조 【회원】</b> 학과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각 학과에 소속된 회원 전원으로 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9 조 【회원】</b> 본회 회원 중 각 학과에 소속된 회원 전원은 각 학과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세부 사항은 각 학과학생회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04 조 학과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각 학과에 소속된 회원 전원으로 한다.→ 본회 회원 중 각 학과에 소속된 회원 전원은 각 학과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세부 사항은 각 학과학생회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무은재 학부생이 학과학생회원이 될 수 있는 단서 조항 마련</p>

총학생회칙 제 105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5 조 【목적】</b>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동아리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과외활동을 위하여 각 동아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1 조 【목적】</b>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동아리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과외활동을 위하여 각 동아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p>	<p>1.제 105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1 조</p>

총학생회칙 제 106 조(구성)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6 조 【구성】</b>                      ①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목적에 따라 등록이 인정된 모든 동아리들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세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2 조 【구성】</b>                      ①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목적에 따라 등록이 인정된 모든 동아리들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세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06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2 조</p>

총학생회칙 제 107 조(분과)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7 조 【분과】</b>                      ①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② 분과의 구성 및 분과장의 선출,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3 조 【분과】</b>                      ①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② 분과의 구성 및 분과장의 선출,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07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3 조</p>

총학생회칙 제 108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8 조 【목적】</b>                      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 본회 여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8.12.09.&gt;</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4 조 【목적】</b>                      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 본회 여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1.제 108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4 조</p>

총학생회칙 제 109 조(회원)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09 조 【회원】</b> 총여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여학생 전원으로 한다.</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5 조 【회원】</b> 총여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여학생 전원으로 한다.</p>	<p>1.제 109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5 조</p>

총학생회칙 제 110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0 조 【목적】</b> 생활관자치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학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관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6 조 【목적】</b> 생활관자치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학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관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1.제 110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6 조</p>

총학생회칙 제 111 조(회원)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1 조 【회원】</b> 생활관자치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사생 전원으로 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7 조 【회원】</b> 생활관자치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사생 전원으로 한다.</p>	<p>1.제 111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7 조</p>

총학생회칙 제 112 조(동대표)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2 조 【동대표】</b>                      ① 생활관자치회는 생활관 각 동의 원활한 관리와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표를 둔다. &lt;개정 2017.06.01.&gt;                      ② 동대표의 선출,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8 조 【동대표】</b>                      ① 생활관자치회는 생활관 각 동의 원활한 관리와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표를 둔다.                      ② 동대표의 선출,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1.제 112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8 조</p>

총학생회칙 제 113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3 조 【목적】</b>                      무은재 학생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민주적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6.03.05., 2017.09.07., 2018.12.09.&gt;</p>	<p><b>(자치기구세칙)</b>  <b>제 19 조 【목적】</b>                      무은재 학생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민주적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p>	<p>1.제 113 조 → 자치기구세칙 제 19 조</p>

총학생회칙 제 114 조(회원)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4 조 【회원】</b>                      무은재 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 전원으로 한다. &lt;개정 2016.03.05., 2017.09.07., 2018.12.09.&gt;</p>	<p><b>(자치기구세칙)</b>  <b>제 20 조 【회원】</b>                      무은재 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 전원으로 한다.</p>	<p>1.제 114 조 → 자치기구세칙 제 20 조</p>

총학생회칙 제 116 조(정의)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6 조 【정의】</b> 전문기구는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61 조 【전문기구 일반】</b> ① 전문기구는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② 전문기구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를 제·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④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을 둔다. ⑤ 전문기구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인준한다. ⑥ 기타 전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1. 제 116 조 → 총학생회칙 제 61 조 제 1 항 2. 추가 → 제 2,3,4,5,6 항 : 전문기구 통칙을 세칙으로 내림에 따라 핵심 내용은 회칙에 남김</p>

총학생회칙 제 117 조(위원장)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7 조 【위원장】</b>                      ①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lt;개정 2017.06.01.&gt;                      ②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해당 전문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하고 총학생회장이 인준한다.</p>	<p><b>(전문기구세칙)</b>  <b>제 2 조 【위원장】</b>                      ①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해당 전문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하고 총학생회장이 인준한다.</p>	<p>1.제 117 조 → 전문기구세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118 조(개정)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8 조 【개정】</b></p> <p>①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p> <p>② 전문기구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 76 조제 2 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③ 전문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 76 조제 2 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전문기구세칙)</b></p> <p><b>제 3 조 【개정】</b></p> <p>①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p> <p>②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22 조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35 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7 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전문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2 항과 3 항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전문기구가 신설된 경우, 해당 분기의 재정은 「특별기구세칙」 제 4 조를 준용한다.</p>	<p>1.제 1 항 → 전문기구세칙 제 3 조 1 항</p> <p>2.제 2 항 전문기구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 76 조제 2 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22 조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35 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7 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3.제 3 항 → 전문기구세칙 제 3 조 4 항</p> <p>4.추가 → 제 5 항 :전문기구 신설 시 재정 사용의 근거 조항</p>

총학생회칙 제 119 조(자치규칙·내규)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19 조 【자치규칙·내규】</b></p> <p>①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p> <p>② 전문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전문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전문기구세칙)</b></p> <p><b>제 4 조 【자치규칙·내규】</b></p> <p>①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p> <p>② 전문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전문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제 119 조 → 전문기구세칙 제 4 조</p>

총학생회칙 제 120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0 조 【목적】</b>                      생각나눔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b>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b>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p>	<p><b>(전문기구세칙)</b>  <b>제 6 조 【행사준비지원위원회】</b>                      행사준비지원위원회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구이다.</p>	<p>1. 제 120 조 → 전문기구세칙 제 6 조</p> <p>2. 제 120 조                      - 생각나눔 → 행사준비지원위원회                      : 전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구의 목적이 명칭에 드러날 필요가 있음. 원 기구명은 차치규칙으로 규정 가능.                      -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 삭제                      준비위원회의 대표 및 책임자는 준비위원회의 위원장.</p>

총학생회칙 제 121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1 조 【목적】</b>                      학생교육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p>	<p><b>(전문기구세칙)</b>  <b>제 7 조 【학생교육위원회】</b>                      학생교육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구이다.</p>	<p>1.제 121 조 → 전문기구세칙 제 7 조</p>

총학생회칙 제 122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2 조 【목적】</b>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은 본교 도서관 이용객들의 권익 증진과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p>	<p><b>(전문기구세칙)</b>  <b>제 8 조 【도서관 자치위원회】</b>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본교 도서관 이용객들의 권익 증진과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구이다.</p>	<p>1. 제 122 조 → 전문기구세칙 제 8 조</p> <p>2. 122 조                      -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 → 도서관 자치위원회                      :120 조 개정과 같은 맥락</p>

총학생회칙 제 123 조(목적)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3 조 【목적】</b>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은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 인권 의식에 대한 고취, 인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lt;본조신설 2017.12.21.&gt;</p>	<p><b>(전문기구세칙)</b>  <b>제 9 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b>                      ①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 인권 의식에 대한 고취, 인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구이다.</p>	<p>1. 제 123 조 → 전문기구세칙 제 9 조 1 항                      2. 122 조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120 조 개정과 같은 맥락</p>

총학생회칙 제 124 조(권한)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4 조 【권한】</b>                      ①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은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lt;본조신설 2017.12.21.&gt;                      ②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은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lt;본조신설 2017.12.21.&gt;</p>	<p><b>(전문기구세칙)</b>  <b>제 9 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b>                      ②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p>	<p>1.제 1 항 → 전문기구세칙 제 9 조 1 항                      2.제 2 항 → 전문기구세칙 제 9 조 2 항</p>

총학생회칙 제 125 조(정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5 조 【정의】</b> 언론기구는 회원들에게 본회 내외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62 조 【언론기구 일반】</b> ① 언론기구는 회원들에게 본회 내외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② 언론기구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언론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를 제·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④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을 둔다. ⑤ 기타 언론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1. 제 125 조 → 총학생회칙 제 62 조 2. 추가 → 총학생회칙 제 62 조 제 2,3,4,5 항 : 언론기구 통칙을 세칙으로 내림에 따라 핵심 내용은 회칙에 남김</p>

총학생회칙 제 126 조(위원장)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6 조 【위원장】</b>                      ① 언론기구의 위원장은 언론기구를 대표한다.                      ② 언론기구 위원장은 언론기구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언론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구 위원장은 언론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한다</p>	<p><b>(언론기구세칙)</b>  <b>제 2 조 【위원장】</b>                      ① 언론기구의 위원장은 언론기구를 대표한다.                      ② 언론기구 위원장은 언론기구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언론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구 위원장은 언론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한다.</p>	<p>1. 제 126 조 → 언론기구세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127 조(권한)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7 조 【권한】</b></p> <p>① 언론기구는 활동함에 있어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기구 혹은 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lt;개정 2019.05.14.&gt;</p> <p>② 언론기구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언론기구는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언론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언론기구의 예산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 5 일 전까지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기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해당 예산안 심의 안건이 발의된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과 언론기구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의결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총학생회칙)</b></p> <p><b>제 63 조 【권한과 의무】</b></p> <p>① 언론기구의 활동에 대한 외부의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② 언론기구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언론기구는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언론기구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언론기구세칙)</b></p> <p><b>제 3 조 【거부권】</b></p> <p>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각 언론기구의 예산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 5 일 전까지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언론기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해당 예산안 심의 안건이 발의된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과 언론기구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의결한다</p>	<p>1. 제 1,2,3 항 → 총학생회칙 제 63 조제 1,2,3 항</p> <p>2. 제 4 항 → 언론기구세칙 제 3 조</p> <p>3. 제 1 항 - 언론기구는 활동함에 있어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기구 혹은 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언론기구의 활동에 대한 외부의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언론기구의 자유도를 확장</p> <p>3. 추가 → 언론기구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유도는 인정하되 의무를 더 강하게 규정.</p>

총학생회칙 제 128 조(의무)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8 조 【의무】</b></p> <p>①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p> <p>②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p> <p>③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p> <p>④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p>		<p>1.제 128 조 → 삭제</p> <p>언론기구 위원의 의무는 언론기구 자치규칙 혹은 내규로 규정할 내용.</p>

총학생회칙 제 129 조(징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29 조 【징계】</b>                      ① 위원장은 언론기구의 횡령, 허위 사실 유포, 그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만 해임될 수 있다.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 60 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은 언론기구의 횡령, 허위 사실 유포, 그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만 징계받을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 60 조를 준용한다.</p>	<p><b>(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b>  <b>제 14 조 【징계범위】</b>                      ③ 언론기구에 제 14 조 1 항 4 호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횡령, 허위 사실 유포, 그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만 가능하다.</p>	<p>1. 제 129 조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 제 14 조 3 항                      : 총학생회는 개인에게 징계할 수 없음. 위원장 혹은 위원의 잘못에 대해 기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제 1,2 항 내용을 합침.</p>

총학생회칙 제 130 조(개정)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0 조 【개정】</b></p> <p>① 언론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분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p> <p>② 언론기구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 76 조제 2 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③ 언론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 76 조제 2 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언론기구세칙)</b></p> <p><b>제 4 조 【개정】</b></p> <p>① 언론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분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p> <p>② 언론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22 조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언론기구는 「재정운용세칙」 제 35 조, 제 36 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분기 종료 후 7 일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언론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2 항과 3 항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p>	<p>1. 제 130 조 → 언론기구세칙 제 4 조</p> <p>2. 제 130 조 2 항 → 언론기구세칙 제 4 조 2 항, 3 항</p> <p>:예산안,결산보고서 처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p>

**총학생회칙 제 131 조(자치규칙·내규)**

구분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1 조 【자치규칙·내규】</b></p> <p>①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p> <p>② 언론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언론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언론기구세칙)</b></p> <p><b>제 5 조 【자치규칙·내규】</b></p> <p>①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p> <p>② 언론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언론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제 131 조 → 언론기구세칙 제 5 조</p>

총학생회칙 제 132 조(목적)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2 조 【목적】</b>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발간 및 상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언론기구이다.</p>	<p><b>(언론기구세칙)</b> <b>제 6 조 【교지편집위원회】</b>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발간 및 상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언론기구이다.</p>	<p>1. 제 132 조 → 언론기구세칙 제 6 조</p>

총학생회칙 제 132 조의 2(명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2 조의 2 【명칭】</b>                      교지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장이라 한다. &lt;본조신설                      2017.06.01.&gt;</p>		<p>1. 제 132 조의 2 → 삭제                      : 위원장의 명칭은 자치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p>

총학생회칙 제 133 조(목적)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3 조 【목적】</b>                      방송국은 방송 제작 및 상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언론기구이다.</p>	<p><b>(언론기구세칙)</b>  <b>제 7 조 【방송국】</b>                      방송국은 방송 제작 및 상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언론기구이다.</p>	<p>1. 제 133 조 → 언론기구세칙 제 7                      조</p>

총학생회칙 제 133 조의 2(명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3 조의 2 【명칭】</b>                      방송국의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국원이라 한다. &lt;본조신설                      2017.06.01.&gt;</p>		<p>1. 제 133 조의 2 → 삭제                      : 위원장, 위원의 명칭은 자치규칙                      으로 규정할 수 있음.</p>

총학생회칙 제 134 조(정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4 조 【정의】</b>                      협의기구는 본회 산하 기구간의 발전적 협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민주적인 의사 조율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기구이다.</p>	<p><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b>  <b>제 1 조 【목적】</b>                      본 규칙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학과학생회 간의 발전적 협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민주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제 134 조                      : 협의기구는 본회 산하 기구간의                      → 학과학생회 간의                      : 협의기구가 삭제되고,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가 학과학생회의 협의체의 형태로 규정되며, 협의기구의 조항이 일부 수정되어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의 조문으로 들어감</p>

총학생회칙 제 135 조(의장)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5 조 【의장】</b></p> <p>① 협의기구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p> <p>② 의장은 호선하며 의장 사고 시 호선으로 직무 대행을 선출한다.</p> <p>③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해당 협의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세칙」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p> <p>⑤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기구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의장은 협의기구의 재적 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은 상시 공개되어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b></p> <p><b>제 3 조 【의장단】</b>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의장 1 인, 부의장 1 인을 호선하며 의장 사고 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 4 조 【의장의 의무】</b> ① 의장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② 의장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규칙」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학과학생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 5 조 【위원 명단 공개】</b> 의장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은 상시 공개되어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제 1 항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규칙 제 4 조제 1 항</p> <p>2. 제 2 항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규칙 제 3 조</p> <p>3. 제 3,4,5,6 항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 제 4 조 제 2,3,4,5 항</p> <p>4. 제 7 항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규칙 제 5 조</p> <p>5. 제 2 항 - 의장은 호선하며 의장 사고 시 호선으로 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 의장 1 인, 부의장 1 인을 호선하며 의장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부의장을 회칙에서 명시. 부대표 파견을 가능하게 함.</p> <p>6. 제 1,3,4,5,6,7 항 -협의기구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제 134 조(목적)의 개정과 같은 맥락</p>

총학생회칙 제 136 조(개정)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6 조 【개정】</b></p> <p>① 협의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p> <p>② 협의기구는 전체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 76 조제 2 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③ 협의기구 의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 76 조제 2 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b></p> <p><b>제 6 조 【개정】</b></p> <p>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회의 재정은 「전문기구세칙」 제 3 조를 준용한다.</p>	<p>1. 제 1 항,2 항,3 항 → 삭제 : 협의기구라는 산하 기구 분류는 사라졌으므로 삭제.</p> <p>2. 추가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회의 재정은 「전문기구세칙」 제 3 조를 준용한다. : 본 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p>

총학생회칙 제 137 조(목적)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7 조 【목적】</b>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각 학과학생회 간의 상임 협의기구이다.</p>	<p><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b> <b>제 1 조 【목적】</b> 본 규칙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학과학생회 간의 발전적 협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민주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제 137 조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 제 1 조 2. 제 137 조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각 학과학생회 간의 상임 협의기구이다. → 본 규칙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학과학생회 간의 발전적 협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민주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협의 기구의 정의를 포함한 새 목적 규정</p>

총학생회칙 제 138 조(구성)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8 조 【구성】</b>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각 학과학생회장을 위원으로 둔다.</p>	<p><b>(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b> <b>제 2 조 【구성】</b>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각 학과학생회장을 위원으로 둔다.</p>	<p>1. 제 138 조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규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139 조(정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39 조 【정의】</b>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임 독립기구이다.</p>	<p><b>(총학생회칙)</b>  <b>제 64 조 【특별기구 일반】</b>                      ①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임 독립기구이다.                      ② 특별기구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p>	<p>1. 제 139 조 → 총학생회칙 제 64 조제 1 항                      2. 추가 → 총학생회칙 제 64 조제 2,3 항                      :특별기구 장 통칙이 세칙으로 내려감에 따라 핵심 내용을 회칙으로 남김</p>

총학생회칙 제 140 조(성립 요건)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0 조 【성립 요건】</b></p> <p>①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li> <li>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li> <li>3.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범기구적 연합 또는 대표 단체가 요구될 때</li> </ol> <p>② 특별기구의 설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 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p>	<p><b>(특별기구세칙)</b></p> <p><b>제 2 조 【성립 요건】</b></p> <p>①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li> <li>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li> <li>3.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범기구적 연합 또는 대표 단체가 요구될 때</li> </ol> <p>② 특별기구의 설치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 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p>	<p>1. 제 140 조 → 특별기구세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141 조(제반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1 조 【제반사항】</b></p> <p>① 특별기구의 활동 기간, 구성 및 직무범위는 기구의 설치를 의결할 때 함께 정한다.</p> <p>② 특별기구의 대표로서 해당 특별기구의 집행을 총괄하고 의결기구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위원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t;개정 2018.12.09.&gt;</p> <p>③ 위원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구성권을 가진다. 단, 의결기구는 필요에 따라 구성권을 행사 할 수 있다.</p> <p>④ 기타 제반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p> <p>⑤ 회칙, 세칙,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따른다.</p>	<p><b>(특별기구세칙)</b></p> <p><b>제 3 조 【제반사항】</b></p> <p>① 특별기구의 활동 기간, 구성 및 직무범위는 기구의 설치를 의결할 때 함께 정한다.</p> <p>② 특별기구의 대표로서 해당 특별기구의 집행을 총괄하고 의결기구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위원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구성권을 가진다. 단, 의결기구는 필요에 따라 구성권을 행사 할 수 있다.</p> <p>④ 기타 제반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p> <p>⑤ 회칙, 세칙,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따른다.</p>	<p>1. 제 141 조 → 특별기구세칙 제 3 조</p>

**총학생회칙 제 142 조(전문기구로의 전환·등록)**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2 조 【전문기구로의 전환·등록】</b></p> <p>① 특별기구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임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립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기구가 제 140 조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구 구성원 명부</li> <li>2. 소개서</li> <li>3. 사무계획서</li> <li>4. 자치규칙</li> <li>5. 예산안</li> </ol> <p>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형식요건의 심의 후 해당 기구의 전문기구 설립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p> <p>④ 제 2 항제 4 호의 자치규칙에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 구성원 선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7.06.01.&gt;</p> <p>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해 제출된 전문기구 설립안을 의결한다. 설립이 의결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p> <p>⑥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역시 본조를 적용하여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p> <p>⑦ 사전에 특별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단계 역시 본조를 적용하여 전문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p>	<p><b>(특별기구세칙)</b></p> <p><b>제 5 조 【전문기구로의 전환·등록】</b></p> <p>특별기구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구세칙」 제 5 조에 따라 상임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p> <p><b>(전문기구세칙)</b></p> <p><b>제 5 조 【전문기구의 설치】</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립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총학생회칙」 제 61 조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구 구성원 명부</li> <li>2. 소개서</li> <li>3. 사무계획서</li> <li>4. 자치규칙</li> </ol> <p>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형식요건의 심의 후 해당 기구의 전문기구 설립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p> <p>③ 제 1 항제 4 호의 자치규칙에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 구성원 선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제출된 전문기구 설립안을 의결한다. 설립이 의결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p> <p>⑤ 특별기구 및 의결기구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또한 본조를 적용하여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p>	<p>1. 제 1 항 → 특별기구세칙 제 5 조</p> <p>2. 제 2,3,4,5,6,7 항 → 전문기구세칙 제 5 조</p> <p>:본 조항은 전문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이므로 전문기구세칙 하부 조항으로 편입. 특별기구세칙에는 본 조항을 참조하여 특별기구가 전문기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p> <p>3. 제 6 항</p> <p>-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 특별기구 및 의결기구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p> <p>: 본 조항이 전문기구 세칙으로 이동하며 어색한 조항 수정</p> <p>4. 제 7 항 → 삭제</p> <p>: 본 조항이 전문기구 세칙으로 이동하며 불필요한 내용 삭제</p>



총학생회칙 제 144 조(위원장)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4 조 【위원장】</b>                      ①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준비위원회의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준비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특별기구세칙)</b>  <b>제 6 조 【준비위원회】</b>                      ②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준비위원회의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고,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준비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1. 제 144 조 → 특별기구세칙 제 6 조</p>

총학생회칙 제 145 조(제반사항)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5 조 【제반사항】</b>                      기타 제반 사항은 생각나눔 자치규칙을 따르며 생각나눔 자치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p>	<p><b>(특별기구세칙)</b>  <b>제 6 조 【준비위원회】</b>                      ③ 기타 제반 사항은 생각나눔 자치규칙을 따르며 생각나눔 자치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p>	<p>1. 제 145 조 → 특별기구세칙 제 6 조 3 항</p>

총학생회칙 제 146 조(목적)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6 조 【목적】</b>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특별기구이다.</p>	<p><b>(특별기구세칙)</b> <b>제 7 조 【총학생회인수위원회】</b>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특별기구이다. 구성과 세부 운영 사항은 「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1. 제 146 조 → 특별기구세칙 제 7 조</p> <p>2. 추가 → 구성과 세부 운영 사항은 「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 제정의 근거</p>

총학생회칙 제 147 조(위원장)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7 조 【위원장】</b>                      총학생회장 당선인은 <b>총학생회장</b>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인수 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p>	<p><b>(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b>  <b>제 2 조 【위원장】</b>                      ① 기존 총학생회장 혹은 그에 준하는 자는 총학생회인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수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 당선인은 <b>위원장</b>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인수 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p>	<p>1. 제 147 조 → 총학생회인수규칙 제 2 조                      2. 제 147 조                      - 기존 총학생회장 혹은 그에 준하는 자는 총학생회인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수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추가                      - 총학생회장 → 위원장                      :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인수인계가 효과적으로 진행 되도록 함.</p>

총학생회칙 제 148 조(구성)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8 조 【구성】</b>                      총학생회인수위원은 총학생회장 당선인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며 총학생회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 92 조, 제 93 조를 준용한다.</p>	<p><b>(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b>  <b>제 3 조 【구성】</b>                      총학생회인수위원은 총학생회장 당선인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며 총학생회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집행기구세칙」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를 준용한다.</p>	<p>1. 제 148 조 → 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 제 3 조</p>

**총학생회칙 제 149 조(권한 위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49 조 【권한 위임】</b>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장단이 일정 권한을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총학생회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임기 시작 전에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인수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의사가 상충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단의 의사가 우선하며, 본회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p>	<p><b>(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b>  <b>제 4 조 【권한 위임】</b>                      ①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장단이 일정 권한을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총학생회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임기 시작 전에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인수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의사가 상충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단의 의사가 우선하며, 본회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p>	<p>1. 제 149 조 → 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 제 4 조</p>

총학생회칙 제 150 조(전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0 조 【전환】</b>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로 전환한다.</p>	<p><b>(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b>  <b>제 5 조 【전환】</b>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로 전환한다.</p>	<p>1. 제 150 조 → 총학생회인수위원회규칙 제 5 조</p>

## 총학생회칙 제 9 장 선거

### 1. 총학생회칙 [제 9 장 선거] 삭제

2. 본 장의 하부 조항 중 핵심 조항은 총학생회칙 제 47 조(총학생회장단 선거), 제 48 조(선거 시행)로 이동
3. 상당 부분은 기존 선거시행세칙의 조항과 동일한 조항.
4. 총학생회칙 제 47 조, 48 조로 이동하지 않은 조항 중 기존 선거시행세칙에 없어 새로 삽입한 조항을 구문과 신문에 파란색으로 표시

**총학생회칙 제 151 조(총학생회장단 선거)**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1 조 【총학생회장단 선거】</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1인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b>3분의 1 이상이고 투표자 총수의 과반인 경우에만 당선</b>이 인정된다.</p> <p>④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두 조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에 한해 투표자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최다 득표 후보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단,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 상위 두 후보로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결정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47 조 【총학생회장단 선거】</b></p> <p>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p> <p>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1인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p> <p>③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b>3분의 1 이상</b>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p> <p>④ <b>총학생회장단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총학생회 정회원이고 선거일 현재 학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b></p> <p><b>(선거시행세칙)</b></p> <p><b>제 83 조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b></p> <p>② 단일 후보자인 경우, 「총학생회칙」 제 151 조제 3 항에 따라 당선자는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및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③ 복수 후보자인 경우, 「총학생회칙」 제 151 조제 4 항에 따라 당선자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상위 두 후보자로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결정한다.</p>	<p>1. 제 1,2,3 항→총학생회칙 제 47 조</p> <p>2. 제 4 항→삭제</p> <p>: 선거시행세칙 제 83 조 3 항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p> <p>3. 제 151 조 3 항 내용 변경</p> <p>③ 3분의 1 이상이고 투표자 총수의 과반인 경우에만 당선 인정된다. →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p> <p>: 헌법 대통령 선거 관련 조항 참고하여 수정. 제 83 조제 2 항</p>

총학생회칙 제 152 조(시기)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2 조 【시기】</b>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만료 50 일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lt;개정 2017.06.01.&gt;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 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p>	<p><b>(총학생회칙)</b>  <b>제 48 조 【선거 시행】</b>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만료 50 일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 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p>	<p>1. 제 152 조 → 총학생회칙 제 48 조 제 1 항, 제 2 항</p>

총학생회칙 제 153 조(선거권)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3 조 【선거권】</b>                      ① 본회 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단,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이후의 회원 변동사항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의 경우 제 155 조의 선거인 등록 과정을 거쳐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p>	<p><b>(선거시행세칙)</b>  <b>제 9 조 【선거권】</b>                      ① 「회원에 관한 세칙」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이후의 회원 변동사항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휴학생의 경우 제 11 조의 선거인 등록 과정을 거쳐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p>	<p>1. 제 153 조 → 선거시행세칙 제 9 조</p>

총학생회칙 제 154 조(피선거권)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4 조 【피선거권】</b>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총학생회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1. 학사 4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총학생회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3.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및 누적 2 회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4.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제 1 항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lt;개정 2017.06.01.&gt;                      ③ 제 1 항제 4 호에도 불구하고, 근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된 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7.06.01.&gt;</p>	<p><b>(선거시행세칙)</b>  <b>제 10 조 【피선거권】</b>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총학생회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1. 학사 4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총학생회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제 1 항제 4 호에도 불구하고, 근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된 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1. 제 1 항 3 호, 2 항 → 삭제                      : 성적으로 회원의 기본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음.</p>

총학생회칙 제 155 조(선거인 등록)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5 조 【선거인 등록】</b>                      ① 회원 중 재학생의 경우는 자동으로 선거인으로 등록된다.                      ② 회원 중 휴학생은 별도의 등록 과정을 통해 선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 공고와 함께 선거인 등록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공고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선거인 등록의 세부절차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p>	<p><b>(선거시행세칙)</b>  <b>제 11 조 【선거인 등록】</b>                      ① 회원 중 재학생의 경우는 자동으로 선거인으로 등록된다.                      ② 본교 휴학생은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쳐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에 대한 공고와 함께 선거인 등록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 등록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인 등록원은 「서식관리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등록원을 심의하여 등록원에 누락된 정보가 없고 등록된 사람이 본인이라 판단되는 경우,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킨다.                      ⑥ 제출된 등록원에 누락된 정보가 있거나, 선거인 등록을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판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선거인명부가 공개된 이후에는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제 5 항에 따라 등록이 보류된 경우,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p>	<p>1. 제 1 항 → 선거시행세칙 제 11 조 1 항                      2. 제 2 항 → 삭제                      : 본 내용이 제 11 조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 규정되어 있음.</p>

**총학생회칙 제 156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6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b></p> <p>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장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기구장 중 1 인으로 한다.</p> <p>③ 삭제 &lt;2017.06.01.&gt;</p> <p>④ 삭제 &lt;2017.06.01.&gt;</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단,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lt;개정 2017.06.01.&gt;</p> <p>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그 직을 선거일 50 일 전에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모두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lt;개정 2017.06.01.&gt;</p> <p>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자치기구의 의결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p>	<p><b>(선거시행세칙)</b></p> <p><b>제 12 조 【목적】</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lt;개정 2017.06.01.&gt;</p> <p><b>제 14 조 【위원장】</b> ①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1 인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lt;개정 2017.06.01.&gt;</p> <p><b>제 15 조 【업무 및 권한】</b>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총학생회칙」 및 본 세칙, 선거운동본부장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각 선거본부 및 선거운동본부 감시 5. 「총학생회칙」 및 본 세칙, 선거운동본부장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선거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6.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본부와의 협의 7. 본회 산하 자치기구의 선거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 본회 산하 자치기구의 선거 사무 8. 그 밖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b>제 16 조 【의무】</b>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p>	<p>1. 제 156 조 → 선거시행세칙 제 12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21 조</p>

	<p>개정 2017.06.01.&gt;</p> <p>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본회 산하 자치기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임한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p> <p>⑤ 제 4 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표일 50 일 이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할 경우,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본회 산하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을 득할 수 있다.</p> <p><b>제 17 조 【선거관리 권한 위임】</b></p> <p>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자치기구의 의결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한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 선거관리 권한 위임은 투표일로부터 50 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자치기구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 투표일로부터 45 일 전까지는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 거절을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을 승인한 경우 24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 21 조 【회의】</b></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모두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lt;개정 2017.06.01.&gt;</p>	
--	---	--

총학생회칙 제 157 조(보궐선거)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7 조 【보궐선거】</b>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 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 80 조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lt;개정 2017.06.01.&gt;</p>	<p><b>(집행기구세칙)</b>  <b>제 48 조 【선거 시행】</b>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만료 50 일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 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되고 잔임 기간이 150 일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p>	<p>1. 제 157 조 → 제 48 조제 3 항                      2. 단, 잔임 기간이 150 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 80 조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 삭제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집행기구세칙으로 규정됨.</p>

총학생회칙 제 158 조(선거시행세칙)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8 조 【선거시행세칙】</b>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p><b>(총학생회칙)</b>  <b>제 47 조 【총학생회장단 선거】</b>                      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1. 제 158 조 → 총학생회칙 제 47 조 제 5 항</p>

## 총학생회칙 제 10 장 재정

1. 총학생회칙 [제 10 장 재정] 삭제
2. 상당 부분은 기존 재정운용세칙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
3. 기존 재정운용세칙에 없어 새로 삽입한 조항을 구문과 신문에 파란색으로 표시.

총학생회칙 제 159 조(원칙)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59 조 【원칙】</b> ①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12.09.&gt;</p> <p>② 본회의 재정은 중앙 재정과 독립 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본회 재정은 중앙 재정을 칭한다. &lt;신설 2018.12.09.&gt;</p>	<p><b>(재정운용세칙)</b></p> <p><b>제 1 조 【원칙】</b></p> <p>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p> <p>② 본회의 재정은 중앙 재정과 독립 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본회 재정은 중앙 재정을 칭한다..</p>	<p>1. 제 159 조 → 재정운용세칙 제 1 조</p>

총학생회칙 제 160 조(재원)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제 160 조 【재원】 중앙 재정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독립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p>	<p>(재정운용세칙) 제 2 조 【재원】 중앙 재정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p>	<p>1. 제 160 조 → 재정운용세칙 제 2 조</p>

**총학생회칙 제 161 조(총학생회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1 조 【총학생회비】</b> ① 총학생회비는 「재정운용세칙」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비의 조정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p>	<p><b>제 7 조 【총학생회비】</b>                      ① 총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 전년도 2 학기 종강일부터 1 학기 종강 직전 일까지.                      2. 2 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 1 학기 종강일부터 2 학기 종강 직전 일까지.                      ② 총학생회비의 조정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p>	<p>기존 재정운용세칙에 규정된 내용</p>

총학생회칙 제 162 조(회계연도)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2 조 【회계연도】</b>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li> <li>2.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li> <li>3.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li> <li>4.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li> </ol> <p>③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의 회계연도는 해당 자치 기구의 자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lt;신설 2018.12.09.&gt;</p> <p>④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학과학생회의 독립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할 수 있다. &lt;신설 2018.12.0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 학기 : 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개강 직전일까지</li> <li>2. 2 학기 :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봄학기 개강 직전일까지</li> </ol>	<p><b>(재정운용세칙)</b></p> <p><b>제 6 조 【회계연도】</b></p> <p>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② 본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li> <li>2.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li> <li>3.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li> <li>4.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li> </ol> <p>③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의 회계연도는 해당 자치 기구의 자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④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학과학생회의 독립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 학기 : 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개강 직전일까지</li> <li>2. 2 학기 :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봄학기 개강 직전일까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 재정운용세칙에 규정된 내용</li> </ol>

총학생회칙 제 163 조(예산안)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3 조 【예산안】</b> ① 예산안은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b>이 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각 기구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는 해당 기구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b></p> <p>②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은 매 분기 시작일 7 일 이내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p> <p>③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본회 재원 중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과 같이 재원의 총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결산보고서·예산안 등을 참고한 뒤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예산안을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본회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 개월 이내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제 57 조제 2 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⑥ 여러 분기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결산시기를 명확히 보고 하여야 한다.</p> <p>⑦ 제 1 항에서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lt;신설 2018.12.09.&gt;</p>	<p><b>(재정운용세칙)</b></p> <p><b>제 5 조 【재정 운용의 책임】</b></p> <p>⑤ 예산안 편성, 예산의 집행, 결산보고서 작성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p> <p><b>제 24 조 【예산안의 확정】</b></p> <p>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23 조 5 항에 의해 작성된 총학생회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p> <p>② 예산안의 확정은 매 분기 시작 직전일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p> <p>③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 20 조 【준비위원회예산】</b></p> <p>② 준비위원회의 예산은 제 6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시기를 명확히 하여 여러 분기에 걸쳐 집행될 수 있다.</p> <p><b>제 23 조 【총학생회 예산안의 편성】</b></p> <p>⑥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본회 재원 중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과 같이 재원의 총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예산안·결산보고서 등을 참고한 뒤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예산안을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47 조 【예산】</b></p> <p>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본회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 개월 이내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세칙」 제 14 조제 2 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p>	<p>1. 제 1 항 → 재정운용세칙 제 5 조 제 5 항</p> <p>2. 제 2,4 항 → 재정운용세칙 제 24 조</p> <p>3. 제 3 항 → 재정운용세칙 제 23 조 제 6 항</p> <p>4. 제 5 항 → 의결기구세칙 제 47 조 제 5 항 :준예산 편성은 중앙운영위원회 업무이므로 의결기구세칙 하부로 이동</p> <p>5. 제 6 항 → 재정운용세칙 제 20 조 제 2 항 :여러 분기에 걸쳐 집행 될 수 있는 사업을 준비위원회 예산으로 한정</p> <p>6. 제 7 항 → 삭제 : 총학생회칙, 의결기구세칙, 재정 운용세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충분히 더 자세히 규정 가능.</p> <p>7. 제 1 항 - 예산안은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편성하여 → 예산안 편성, 예산의 집행, 결산보고서 작성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p>

	<p>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전체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23 조 5 항에 의해 작성된 총학생회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예산안의 확정 주체를 중앙운영위원회로 설정함으로써 본 조항 수정  - 이 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각 기구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는 해당 기구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 → 삭제  :자치기구세칙, 전문기구세칙, 언론기구세칙, 특별기구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p> <p>8. 2 항  - 편성 → 삭제  : 예산안의 편성의 기한 규정할 필요 없음. 확정에 대한 기한만 규정하면 됨.  - 분기 시작일 7일 이내까지 → 분기 시작 직전일까지  : 예산은 분기 시작전에 완료 되어야 함.</p> <p>9. 4 항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중앙운영위원회 의장  : 예산안 확정 주체를 중앙운영위원회로 설정함으로써 본 조항 수정</p>
--	---	---

총학생회칙 제 164 조(경정예산)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4 조 【경정예산】</b> ①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지출을 가감하여야 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7.06.01.&gt;</p> <p>② 편성한 경정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책임 하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준되어야 한다.</p>	<p><b>(재정운용세칙)</b></p> <p><b>제 26 조 【경정예산편성】</b></p> <p>①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지출을 가감하여야 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p> <p>② 본회의 각 기구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경정예산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의결기구세칙」 제 38 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편성한 경정예산을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한다.</p>	<p>기존 재정운용세칙에 규정된 내용</p>

총학생회칙 제 165 조(예산집행)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5 조 【예산집행】</b> ① 예산의 집행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p> <p>②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집행한 예산 일체를 영수증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각 기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총무는 기구장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각 기구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p> <p>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재정 업무 집행을 위하여 <b>계열회의의 한 종류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정 담당자와 각 기구의 동종 업무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재정운영회의</b>를 개최할 수 있다.</p>	<p><b>(재정운영세칙)</b></p> <p><b>제 5 조 【재정 운용의 책임】</b></p> <p>⑤ 예산안 편성, 예산의 집행, 결산보고서 작성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p> <p><b>제 30 조 【기구 예산 집행】</b></p> <p>① 본회의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집행한 예산 일체를 영수증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본회의 각 기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총무는 기구장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각 기구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p> <p><b>제 11 조 【재정운영회의】</b></p> <p>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전체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세칙」 제 12 조제 2 항에 의하여 재정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1. 제 1 항→재정운영세칙 제 5 조</p> <p>2. 제 2,3 항→재정운영세칙 제 30 조</p> <p>3. 제 4 항 → 재정운영세칙 제 11 조</p> <p>4. 제 4 항 - 계열회의의 한 종류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정 담당자와 각 기구의 동종 업무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 「집행기구세칙」 제 12 조제 2 항에 의하여 : 집행기구세칙의 계열회의 조항 준용</p>

총학생회칙 제 166 조(결산)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66 조 【결산】</b> ① 결산보고서는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다.</p> <p>② 제 163 조제 3 항의 경우와 같이 예산안이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결산보고서는 재원의 각 출처를 명시하여 재정의 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인준한 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 163 조제 6 항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기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결산이 완료된 분기에 결산 심의를 한다.</p> <p>⑥ 제 1 항에서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lt;신설 2018.12.09.&gt;</p>	<p><b>(재정운용세칙)</b></p> <p><b>제 5 조 【재정 운용의 책임】</b></p> <p>⑤ 예산안 편성, 예산의 집행, 결산보고서 작성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p> <p><b>(의결기구세칙)</b></p> <p><b>제 36 조 【예산안·결산보고서】</b></p> <p>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인준한 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1. 제 1 항 → 재정운용세칙 제 5 조</p> <p>2. 제 2 항 → 삭제 : 오해할 수 있는 조항. 재정운용세칙의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조항으로 본 조항보다 자세하게 예산안의 유동 편성을 규정할 수 있음.</p> <p>3. 제 3,4 항 → 의결기구세칙 제 36 조제 2,3 항</p> <p>3. 제 5 장 → 삭제 :기존 재정운용세칙으로 규정 가능한 내용.</p> <p>4. 제 6 조 → 삭제 : 의결기구세칙 하부 조항으로 충분히 규정 가능</p>

총학생회칙 제 170 조(발의)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70 조 【발의】</b>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 10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li> <li>3.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li> <li>4.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li> </ol>	<p><b>(총학생회칙)</b> <b>제 65 조 【발의】</b>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 10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li> <li>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li> <li>3. 재적 중앙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2 조 - 3 분의 1 이상의 연서 → 과반수의 연서</li> <li>2. 제 3 조 - 과반수의 연서 → 3 분의 2 이상의 연서</li> <li>3.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삭제 : 총학생회칙 위상 제고에 따라 연서에 의한 발의만 가능하도록 수정</li> </ol>

총학생회칙 제 171 조(개정안 공고)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71 조 【개정안 공고】</b>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b>5일 이상</b>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li> <li>2. 신·구문 대비표</li> <li>3. 제 170 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li> </ol>	<p><b>(총학생회칙)</b> <b>제 66 조 【개정안 공고】</b>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b>15일 이상</b>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li> <li>2. 신·구문 대비표</li> <li>3. 제 65 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2 호 -5일 이상 → 15일 이상 :총학생회칙 위상 제고에 따라 공고 기간을 늘림.</li> </ol>

총학생회칙 제 172 조(의결)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72 조 【의결】</b></p> <p>①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제 171 조에서 규정한 5 일 이상의 공고 기간 후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을 심의·의결한다. &lt;개정 2017.06.01.&gt;</p> <p>② 회칙 개정은 재적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제 13 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에 의해 의결한다.</p> <p>③ 회칙 개정의 의결의 기타사항은 「회의진행세칙」을 준용한다.</p>	<p><b>(총학생회칙)</b></p> <p><b>제 67 조 【의결】</b></p> <p>①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제 66 조에서 규정한 공고 기간 후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의결한다.</p> <p>② 회칙 개정안 부의는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회칙 개정안이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자 3 분의 1 이상의 찬성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회칙 개정은 확정된다.</p>	<p>1. 제 1 항 - 5 일 이상의 → 삭제 : 규정한 공고 기간이 바뀌었으므로 삭제</p> <p>2. 제 2 항 - 회칙 개정을 → 회칙 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 본 회칙을 통해 회칙 개정은 전체 학생대의원회의가 아니라 학생총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p> <p>3. 추가 → 제 3 항 : 회칙 개정안의 확정 조건을 명시</p> <p>4. 제 3 항 → 삭제 : 회칙 개정은 회칙에서만 규정할 수 있도록 제한.</p>

총학생회칙 제 173 조(공포)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73 조 【공포】</b>                      ① 회칙 개정이 <b>의결된</b> 경우, <b>총장 승인 후</b>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7.06.01.&gt;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 170 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b>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b>                      ③ 본조는 <b>세칙 및 규칙의 제·개정에도 준용한다. 이때,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단, 세칙 및 규칙의 공포에 있어서는 총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b></p>	<p><b>(총학생회칙)</b>  <b>제 68 조 【공포】</b>                      ① 회칙 개정이 <b>확정된</b> 경우,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 65 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p>	<p>1. 제 1 항                      - 의결된 → 확정된                      - 총장 승인 후 → 삭제                      : 회칙 개정을 공포하기 위해 총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2. 제 2 항                      - 4 호 → 삭제                      : 개정이 학생총투표로 이루어지므로 필요 없는 조항                       3. 제 3 항 → 삭제                      : 세칙, 규칙에 관한 공포는 의결기구세칙으로 규정</p>

**총학생회칙 제 174 조(규정집)**

구문	신문	개정 내용
<p><b>제 174 조 【규정집】</b></p> <p>① 본회는 매년 3 월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중앙집행위원회의 책임 하에 편찬·배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칙</li> <li>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li> <li>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li> <li>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li> <li>5.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내규</li> <li>6. 편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회칙 개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li> </ol> <p>②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의 수집 및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된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집행기구세칙)</b></p> <p><b>제 10 조 【규정집】</b></p> <p>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년 3 월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편찬·배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칙</li> <li>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li> <li>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li> <li>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li> <li>5.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내규</li> <li>6. 편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회칙 개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li> </ol> <p>②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의 수집 및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된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제 174 조 → 집행기구세칙 제 10 조</p> <p>: 규정집 제작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사무이므로 집행기구세칙으로 이동</p>